

인천지역 중심의 특행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 전략

연구진

강영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지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방 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논의되어 왔음
 - 지방분권을 주요 과제로 보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역대 정부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위한 법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중앙부처의 반발, 제주도의 기이양 사례에서 나타난 한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행 기관 이양은 실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하여 대상 기능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추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특히,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수산 행정 기능의 이양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기능의 이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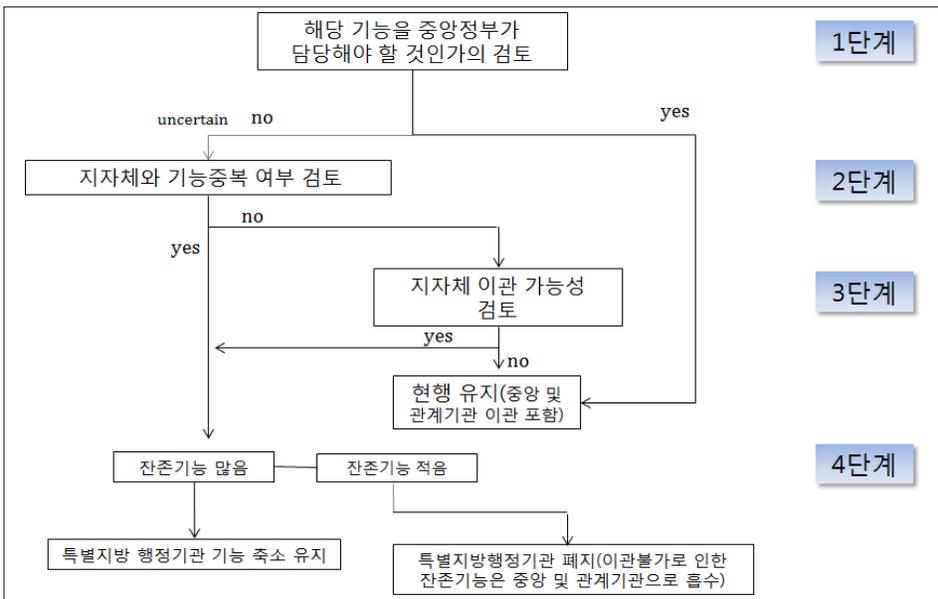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판단 기준

- 본 장에서는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기 위하여 4단계 과정을 거치며 제1단계(중앙정부 공급 적정성 판단)와 제2단계(기능중복성 판단)에 대한 분석을 진행 후, 3단계와 4단계는 소결에서 이관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적용함

- 1단계는 해당 기능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필요성 검토
- 2단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중복 여부 검토
- 3단계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가능성 검토
- 4단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잔존 업무 수준 검토

<그림 1> 본 연구에서의 특행기관 지방이양 판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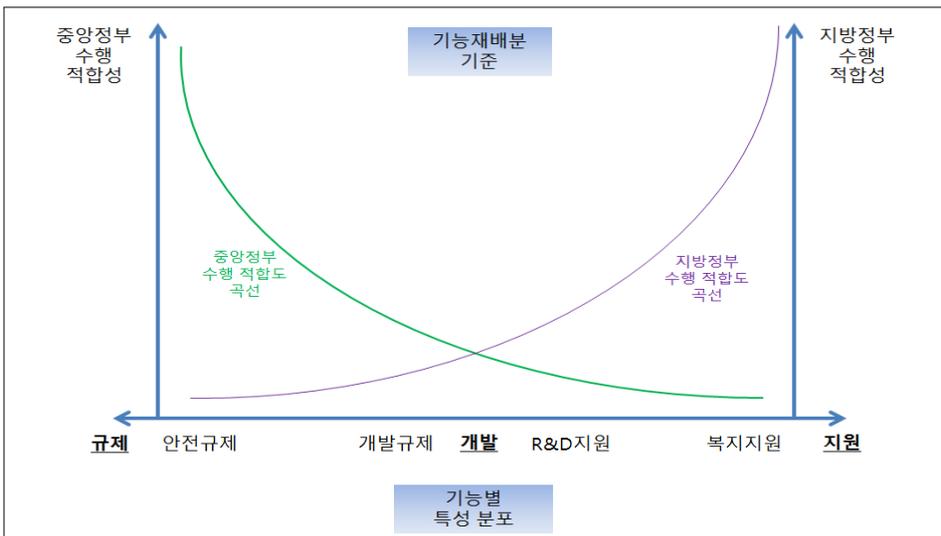


□ 중앙 지방 간 기능 배분 모형

- 앞에서의 판단 절차 중에서 1단계의 판단을 위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 지방 간 기능 배분 모형을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함
- 중앙 지방 간 기능 배분 판단은 각 기능의 특징, 특히 수혜자 관점에서의 정부 역할에 관한 특징을 판단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중에서 어느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게 됨

- 정부의 역할은 시장 실패에서 시작되며 시장이 생산을 실패하게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는데 재화와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 최적의 공급방식은 달라지게 됨
- 재화와 서비스의 유형 구분은 Lowi의 정책 분류-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중에서 구성정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 분류를 좀 더 실무적인 용어로 ‘규제정책’, ‘개발정책’, ‘지원정책’으로 명명하여 사용하고자 함
- 다만,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지원 기능 중에서도 개발 기능에 가까운 기능이 있을 수 있고, 규제 기능 중에서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동일선 상에서 나열할 수 있음
-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이 지원 기능에 가까운 경우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 개발 기능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정용덕, 2001), 규제 기능에 가까운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음(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

<그림 2> 중앙 지방 간 기능 배분 판단 기준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

- 이상의 판단 기준을 토대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정비 방안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각 기능별로 일부 또는 전부 이관의 정비 방안이 다르며 각각에 대한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상 정비 방안

구분(BRM 기준)		정비 방안			판단 근거
대기능	중기능	유지	이관		
			일부	전부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공유수면 점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점사용 기능은 개발적 성격을 가지나 기능중복성이 나타나므로 이관이 타당
	근해어업관리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어업관리육성 기능은 지원적 성격을 가지나 중앙과 지방간에 사무상의 기능중복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보상 업무나 보조금 지원 업무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로 이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
	어장이용 및 어항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이용 및 어항관리 기능은 개발적 성격을 가지나 기능중복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어항 개발 계획을 제외한 유지 및 관리 사무의 경우 집행적 성격의 업무로 이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	항만물류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물류정책 기능은 주로 개발적 성격과 규제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기능중복성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항만개발계획을 제외한 개발 사업 집행 업무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여 지자체의 이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

구분(BRM 기준)		정비 방안			판단 근거
대기능	중기능	유지	이관		
			일부	전부	
	해운항만 정책 및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물류정책은 항로표지 관련 업무의 규제적 성격과 항만시설 관리의 개발적 성격이 동시에 나타남 ✓ 대부분의 사무가 지자체와 기능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 ✓ 항로표지 관련 사무는 전국적인 통일성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항만시설 관리 사무의 경우에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여 지자체의 이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
해운항만 관련 하천정비 관리	연안관리 정비사업 및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정비사업 및 점검 기능은 개발적 성격이 강하고, 지자체와 중복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집행적 성격이 강하여 지자체 이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
	연안관리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정책은 개발적 성격이 강하나 지자체에서도 이미 관련 업무를 실시하고 있어 기능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고, 집행적 성격이 강하여 지자체 이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

- 이상의 판단 기준을 토대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대한 정비 방안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각 기능별로 일부 또는 전부 이관의 정비 방안이 다르며 각각에 대한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 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상 정비 방안

구분(BRM 기준)		정비 방안			판단 근거
대기능	중기능	유지	이관		
			일부	전부	
기업 지원	중소기업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지원 업무는 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무에서 기능중복성이 나타나므로 전부 이관이 타당
지역 경제	시장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지원 업무는 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기능중복성을 나타내므로 전부 이관이 타당
산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산업 및 중소기업금융관련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및 중소기업 금융관련 지원 업무는 지원적 성격을 가지나 기능중복성을 나타내고 있는 않음 지역 금융기관과의 연계 업무로서 지자체가 오히려 지역 정보 활용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부 이관이 타당
무역	수출관련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관련 지원 업무는 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기능중복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수출지원센터 운영 업무는 집행적 성격을 지니고 수출유망 중소기업 인증 업무 역시 지자체가 수행이 어려울 만큼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부 이관이 타당
산업기술 개발육성	일반산업 기술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산업 기술지원 기능은 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기능중복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 제품의 시험 분석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이관이 타당하지 않음

구분(BRM 기준)		정비 방안			판단 근거
대기능	중기능	유지	이관		
			일부	전부	
					✓ 그 밖의 기술 지원과 산학협력 지원 등의 업무는 집행적 성격을 지녀 지자체의 수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함

□ 추진전략

○ 기본방향

- 국가 행정의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제고인 만큼 분권과 특행 이양이라는 개혁도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
- 분권 논의에서 주민 삶의 질 제고가 최우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간의 Top-Down식 분권 논의를 지양하고 Bottom-Up식 분권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함
- 또한, 국가 행정 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분권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파레토 최적 지점’을 찾아야 하며, 제도 개혁에는 어떤 방식으로 든 비용이 수반되므로 적응 시차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행기관의 재정비는 인력 및 예산의 이양을 동반하는 실질적인 이양이어야 하며, 특히, 권한 이양으로 인해 국비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됨

○ 실행전략

- 특행 이양으로 인한 기능 재배분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명확성이 선행조건으로서 확보되어야 함
- 권한 이양의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중앙 지방 양자 간의 조율을 위한 상시적인 조정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전문성 제고와 리더십 배양을 통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함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체계	6
제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이론적 검토	7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9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9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9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근거	11
1. 법적 검토	11
2. 이론적 근거	12
3. 역대 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이력	14
4. 해외 사례	16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의 기준	17
1. 법적 기준	17
2. 이론적 기준	19
3. 실무적 기준	20
4. 중앙 지방 간 기능재배분 판단 절차	22
5. 소결	23



제3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27
제1절 분석 개요	29
1. 분석 대상	29
2. 분석 방법	29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현황	30
1.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의 일반적 현황 ...	30
2.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현황	32
제3절 기관별 현황	34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34
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56
제4절 소결	74
제4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사례 분석	75
제1절 제주도 사례 분석	77
1. 이관 배경	77
2. 항만·해양·수산사무	81
3. 중소기업사무	85
제2절 해외 사례 분석	89
1. 해양수산청 관련 해외 사례	89
2. 중소기업청 관련 해외 사례	92
제3절 시사점	96



제5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분석 97

제1절 분석모형 99

제2절 지방이양 대상 선정 103

-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03
- 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9

제3절 소결 116

제6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추진 전략117

제1절 기본 방향 119

- 1. 주민의 삶의 질 제고 119
- 2. Bottom-Up 식 분권 논의 활성화 119
- 3.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달성 지향 120
- 4.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이양 120

제2절 실행 전략 제안 122

- 1. 선행 조건: 법적 명확성 확보 122
- 2. 추진 전략 122

【참고문헌】125

【부록】128

- 1. 해양수산행정 조직의 역사 128
- 2. 중소기업행정 조직의 역사 131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및 설치의 법적근거	10
<표 2-2>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법적 근거	11
<표 2-3> 역대 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이력	15
<표 2-4> 이명박 정부의 해양항만 관련 특행 이양 현황	15
<표 2-5>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관련 해외 사례	16
<표 2-6>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사무배분 기준	18
<표 2-7>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위한 경영진단 및 연구용역결과	21
<표 3-1> 충남 이양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29
<표 3-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31
<표 3-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변화 추이	31
<표 3-4>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현황	32
<표 3-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력 및 예산	35
<표 3-6>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36
<표 3-7> 인천광역시 관련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39
<표 3-8>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련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44
<표 3-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46
<표 3-10>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력 및 예산	57
<표 3-1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57
<표 3-12> 인천광역시 관련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60
<표 3-1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련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63
<표 3-14>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65



<표 3-15>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기능 비교 분석 결과 요약	74
<표 4-1> 제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추진경위	78
<표 4-2> 특별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구분	78
<표 4-3> 특별행정기관별 이관 현황	79
<표 4-4> 지특 제주계정에 의한 재정 지원액	80
<표 4-5> 항만-해양수산 기능 중 이관 사무 현황	81
<표 4-6> 항만-해양수산 기능 이관 결과	82
<표 4-7> 항만-해양수산 기능 이관 사무 활용 현황	83
<표 4-8> 중소기업지원 기능 중 이관 사무 현황	85
<표 4-9> 중소기업지원 기능 이관 결과	86
<표 4-10> 중소기업지원 기능 이관 사무 활용 현황	87
<표 4-11> 각국 항만시설 개발 주체	90
<표 4-12> 각국의 자치단체 항만관리 참여유형	91
<표 4-13> 각국의 항만관리 운영 주체	91
<표 4-14>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	93
<표 5-1> 인천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검토 대상	99
<표 5-2> 특행 사무 이양 판단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기준	101
<표 5-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상 1단계 판단 결과	103
<표 5-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상 2단계 판단 결과	104
<표 5-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상 정비 방안	108
<표 5-6>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상 1단계 판단 결과	110
<표 5-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상 2단계 판단	

결과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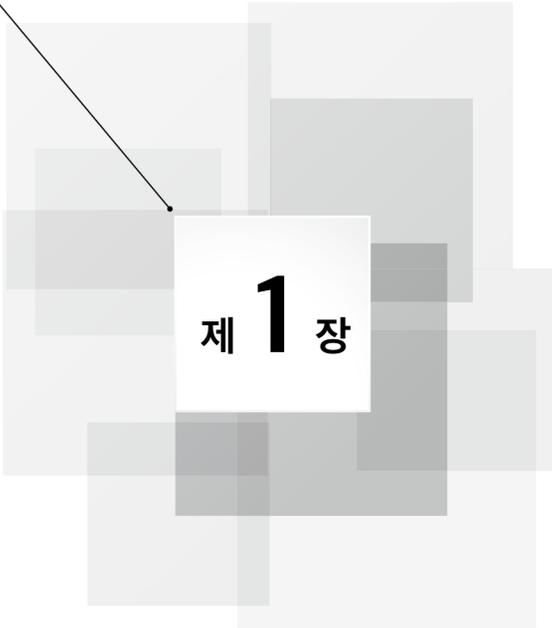
<표 5-8>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상 정비 방안 .. 115

<표 5-9>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별 정비
방안 요약 116



그림 차례

<그림 1-1> 본 연구의 연구 체계	6
<그림 2-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및 정비 논거 ..	13
<그림 2-2> 중앙 지방 간 기능재배분 판단 절차	22
<그림 2-3> 본 연구에서의 특행기관 지방이양 판단 절차	23
<그림 2-4> 중앙 지방 간 기능 배분 판단 기준	25
<그림 3-1> 인천광역시 이양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분석 모형	30
<그림 3-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34
<그림 3-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조직	35
<그림 3-4> 인천광역시 해양수산국 조직도	39
<그림 3-5> 인천광역시 중구청 항만공항수산과 조직도	43
<그림 3-6>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직도	56
<그림 3-7>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국 조직도	60
<그림 3-8>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국 조직도	62
<그림 5-1> 본 연구에서 특행기관 지방이양 판단 절차	100
<그림 5-2> 기능 배분 논리 모형의 기능별 판단 기준	102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KRILA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방 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논의되어 왔음
 - 지방분권을 주요 과제로 보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역대 정부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위한 법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2003년 통과된 ‘지방분권특별법’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된 ‘지방분권에관한특별법’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 명시하고 있음
- 최근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이 실천적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의 저항 및 실행상의 문제점 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
 -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소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이양하기 보다 직접 추진하는 것이 인력 및 예산 증액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금창호 외, 1996)
 - 특행 이양을 통해서 대폭적인 사무 이양이 이루어진 제주도의 경우에도 이양 과정에서의 실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 및 주민들의 성과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하여 대상 기능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추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특히,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수산

행정 기능의 이양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기능의 이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분석 대상

- 대상범위
 -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그 하부조직·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그 하부조직 및 인천시청에서의 관련 조직이 그 대상이 됨
- 시간범위
 - 연구의 시간범위는 원칙적으로는 2018년 현재를 기점으로 설정

나. 분석 내용

- 인천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파악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태 분석: 조직, 인력 예산, 기능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관한 국내외 사례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기준 설정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각 기능별 특성에 부합하는 이론적 기준, 실무적 기준 도출
- 인천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전략 제시
 - 현실적인 단기 전략과 보다 진전된 자치분권 상황에 부합하는 장기 전략을 동시에 제시

2. 연구의 방법

○ 문헌 분석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및 이양 역사 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정부기능별 특성을 토대로 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기준의 차별점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사례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이양 사례 분석: 이양 과정 및 성과, 한계점 등 조사
- 중소기업 지원 분야 및 해양수산기능 분야의 정부조직 운영 현황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사례 등 해외 사례 조사

○ 면담 조사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기준 설정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기능/사무 발굴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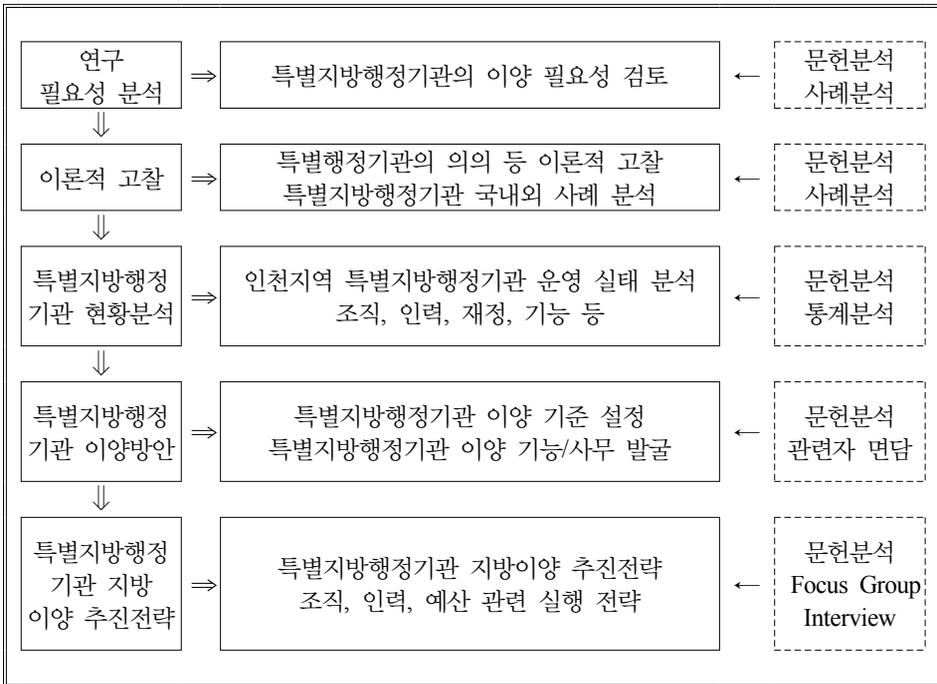
○ 표적집단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추진전략 및 조직, 인력, 예산 관련 실행 전략 도출을 위하여 실무자 및 전문가들에 대한 표적집단면담(FGI) 조사 실시

제3절 연구의 체계

- 본 연구에서의 연구 내용과 해당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인천 특행 및 지자체 관련자(실무 담당자) 면담 및 기이양 사례인 제주도청 관련자 면담을 실시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양 사무 발굴과 실행 전략을 도출할 예정임

<그림 1-1> 본 연구의 연구 체계



제 2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이론적 검토

-
-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근거
 -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의 기준

KRILA

제 2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의미함(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 비교 개념

- 중앙정부의 통합지방행정기관: 중앙정부가 지역수준에서 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행정기관(일반행정청)을 설치하여 각 중앙부서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소진광 외, 2002: 13)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분리·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으로 현행법상으로는 교육감과 그 하급기관으로 지역 교육청이 있음(소진광 외, 2002: 16)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의 근거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3조에 의해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아래 <표 2-1>참고)

- 법령에 제시된 기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한다고 하여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설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근거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해 균일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 규모 제공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임

<표 2-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및 설치의 법적근거

법령	내용
정부조직법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정의)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

법령	내용
	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개정 2006.6.15., 2008.2.29., 2013.3.23., 2014.11.19.>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3.24.>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근거

1. 법적 검토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사무배분의 원칙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법적 근거가 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사무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지자체의 사무로 우선 배분한다고 되어 있음

<표 2-2>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법적 근거

법령	내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약칭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의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소진광 외, 2002: 16-21)
 - 정부조직법 제3조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규정 등에 의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헌법 제75조, 제96조 및 지방자치법 제93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 위임 내지 백지위임을 금지
 -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93조는 예외적으로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행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의 설치근거는 엄격히 해석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한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은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2. 이론적 근거

- 이론적 측면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음(주재복·강영주, 2016)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기능적 분권화와 전국적 통일성을 실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방행정의 민주성이 약화되고 분권화에 역행된다는 반박이 있음
 -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광역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지방자치 법적 체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저해한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가외성과 실질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간 또는 지방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무의 중복으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성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시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주장에 대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 주민이나 의회보다는 중앙의 주무 부처와의 관계가 더욱 중시되고 주민통제 및 외부평가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됨(김영수 외, 2002:243)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정책 현장과 가까운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배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대응성을 높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간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저해하고 지역의 발전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음(시도지사협의회, 2009)

<그림 2-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및 정비 논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찬성	vs	반대
기능적 분권화 실현	←-----→	지방행정의 민주성 약화
전국적 통일성 요구	←-----→	분권화 역행
행정의 전문성	←-----→	지방자치 법적 체계 위반
광역행정 실현	←-----→	지방행정의 종합성 저해
가외성과 실질적 효율성 증진	←-----→	중앙-지방 간 · 지방 간 갈등 야기
지자체 수용태세의 한계	←-----→	사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야기

자료: 권영주(201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찬성 vs 반대', 이승종 편저, 「지방자치의 쟁점」, 박영사; 주재복 · 강영주(2016), p.6에서 수정 인용

3. 역대 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이력

- 지방자치시대 이후 각 정부에서, 비록 추진 속도나 추진 성과에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점도 특행 이양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되는 해양항만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비 대상이 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14개 무역항을 제외하고 해양항만 분야에서 항만개발, 공유수면매립 등 항만관리 사무를 위임이관하였음
 - 김대중 정부에서는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위한 목표의 하나로 특행기관의 정비를 계획하고, 1999년 10개 부처 375개 특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중앙부처의 반발로 구체적인 정비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한표환, 2014)
 -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2004년 2월 ‘특별 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개혁전문위원회와 지방분권 전문위원회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음(오재일 외, 2008).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7개 기관을 이양하였음
 -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정책으로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중앙 지방간 권한의 재배분 시책으로 특행기관의 기능조정을 선정하였음.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2단계로 노동, 보훈, 산림, 중기, 환경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특행 정비방안이었음. 정비계획에 따라 1단계정비대상인 3개 분야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본격 정비에 착수하여 도로·하천분야 48명, 해양·항만분야 59명 및 식·의약품분야 101명 등 총 208명의 인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음(한표환, 2014)
 -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이 거의 없음

<표 2-3> 역대 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이력

역대 정부	추진 기구	정비대상 분야	추진 내용
김대중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일원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 병역자원관리 통계관리 국유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 국유림관리 등 4개 분야를 정비대상으로 선정
노무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원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환경 중소기업 국도하천 해양항만 지방노동 식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기능조정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7개 특행기관 이양
이명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이원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국도하천 해양항만 지방노동 식의약품 산림 보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분야 20개 과제를 특행기관의 기능조정 대상으로 선정 도로하천 48명, 해양항만 59명, 식의약품 101명 등 208명 지자체 이양
박근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

<표 2-4> 이명박 정부의 해양항만 관련 특행 이양 현황

* 해양항만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현황

- (이관) 14개 무역항* 제외한 항만관리(항만개발, 공유수면관리 등)

* 부산, 인천, 경인, 평택·당진, 군산, 광양, 울산, 포항, 목포, 마산, 동해·묵호, 대산, 여수, 장항

- (존치) 항만계획, 해사안전, 선원·선박, 해양환경영향평가 기능 등

4. 해외 사례

- 지방분권 강화 기조와 더불어 추진된 세계 각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사례 역시 우리나라 특행 이양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노동당의 집권(1997년) 이후 분권화의 흐름이 가속, 법 제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명시하고 포괄적 권한 이양을 실시함
 - 독일(2005년)과 일본(2007년)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폐지·축소를 추진 하였음
 - 프랑스에서도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인 레지옹을 지방정부화하는 개혁을 실시(1982년)하고, 이후 ‘행정분권기관의 헌장’을 제정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행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표 2-5>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관련 해외 사례

국가	이관 현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 폐지(Quango Cull)를 표명하였음 ■ 이후 분권화의 흐름이 시작되어 법률(Scotland Act 1998, Wales Act 1998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인정함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는 일반·특별행정기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행정체제를 일반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일본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의 “지방분권개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폐지·축소”를 추진함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인 레지옹을 지방정부화 하는 개혁을 실시하였음 ■ 1992년 정부시행령 ‘행정분권기관의 헌장’을 제정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행기관의 각각의 권한을 규정하였음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의 기준

1. 법적 기준

- 특별행정기관의 이관 기준의 법적 근거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의 법적 기준은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배부 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지방분권법)」의 사무배분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사무배분 기준을 ‘중복 배제의 원칙’(지방분권법 제9조, 제1항), ‘보충성의 원칙’(지방분권법 제9조 제2항), ‘포괄적 이관의 원칙’(지방분권법 제9조 제3항)으로 제시할 수 있음(양영철, 2009)
- 중복 배제의 원칙(지방분권법 제9조 제1항)
 - 지방분권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의 사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충성의 원칙(지방분권법 제9조 제2항)
 - 지방분권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시·군·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사무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포괄적 이관의 원칙(지방분권법 제9조 제3항)
 - 지방분권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사무를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 하에서 사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간자율성 존중의 원칙(지방분권법 제9조 제4항)

- 지방분권법 제9조 제4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칙은 사무를 재배분할 때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

<표 2-6>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사무배분 기준

법령	내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약칭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2. 이론적 기준

가. 분야공통 기준

- 앞에서 제시된 법적 기준 이외에도 특행기관을 이관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에 관한 논의가 있음
 - 금창호 외(2012)는 이관 기능의 판단 기준으로 기능 중복성¹⁾, 이관 적합성²⁾, 분야 특이성³⁾의 3가지를 제시하고 실제의 사무 및 기능에 대해 이관 적합 여부를 판단하였음
 - 이은재(1997)은 상보성의 강화, 대표성 증진, 작은 정부의 실현의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함
 - 한국지방자치학회(2002)는 해당 기능의 민간화 적합성⁴⁾, 해당 기능을 중앙 정부가 담당해야 할 필요성⁵⁾,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중복 여부,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가능성⁶⁾,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잔존 업무 수준을 검토기준으로 판단하였음
 - 오재일 외(2008) 역시 이와 비슷하게 보충성의 원칙, 행정책임의 명확화 원칙, 수요자 편익과 참여증진의 원칙을 제시함

-
- 1) 동일목적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처리하는 기능으로 중앙과 지방이 동일한 사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2)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보다 적합한 기능으로 파급효과가 전국적이 아닌 사무,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이 요구되는 사무, 현지 적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지자체의 기존기구로 수행 가능한 사무, 지자체 집행 효율성이 높은 사무인지 여부로 판단함
 - 3) 분야특이성은 이관 회피 판단기준으로 업무 특성상, 수요 특성상 특행의 존립가치가 요구되는지 여부로 판단함
 - 4) 성과측정 가능성, 자체수익모형의 존재, 비용절감의 가능성, 민간에 유사기능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5) 박재희(1999)는 이에 대해 주민과 접촉이 많은 사무, 지역적 특성, 지방, 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와 업무적 연관이 높은 사무,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한 효율이 기대되는 사무, 시책효과가 국지적인 사무, 단순집행사무,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 충분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것을 주장, 김익식(1994)은 기관설립목적을 달성한 기능,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기능, 사무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행되는 기능, 민원인에 불편한 업무기능, 업무성격상 현지성 및 종합성이 큰 기능을 이관 대상으로 봄
 - 6) 지방의 수용의사와 능력, 업무의 성격, 행정서비스 수요자 편익과 참여증진 여부로 판단함

나. 분야별 기준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의 기준은 기능 및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소진광 외, 2002)
 - 진재구(1999)는 사무의 특성 즉, 사무의 전문성 여부, 정책집행 대상 구분의 명료성 여부, 정책대상집단의 특수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야별로 사무 배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함
 - 김종성(2000)은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집행의 연계성과 종합성, 현지성과 특수성, 전문성과 기술성을 그 기준으로 삼았음
 - 한국지방자치학회(2002)는 중앙과 지방의 정책성향이 업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충성의 원칙 등을 적용할 때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음
 - 하정봉(2008)은 사무이양의 성과⁷⁾, 사무이양 적절성⁸⁾, 이해관계자 관심⁹⁾, 이양사무에 대한 지원¹⁰⁾에서 부처별, 사무성격별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사무이양시 해당 요인들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3. 실무적 기준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관한 실무적 기준은 기관의 당사자인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근거로 추출해 볼 수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위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바('98년 경영진단, '99년과 '03년의 행정자치부의 의견조사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시험검사 사무를 제외한 사무와 지도·지원 사무에 대해서 이양 또는 위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해양·수산진흥 분야에서는 이양해야 한다는 지방의 의견과 이양이 불가하

7) 집행의 지역연계, 주민신뢰 향상, 지역실정의 반영, 사무성과의 공개, 행정절차 간소화

8) 이양시기의 적절성, 이양의 타당정도, 이양 사전준비, 이양 희망정도

9) 의회관심의 향상, 단체장관심의 향상, 주민관심의 향상

10) 비재정적 지원, 중앙부처의 협조

다는 중앙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표 2-7>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위한 경영진단 및 연구용역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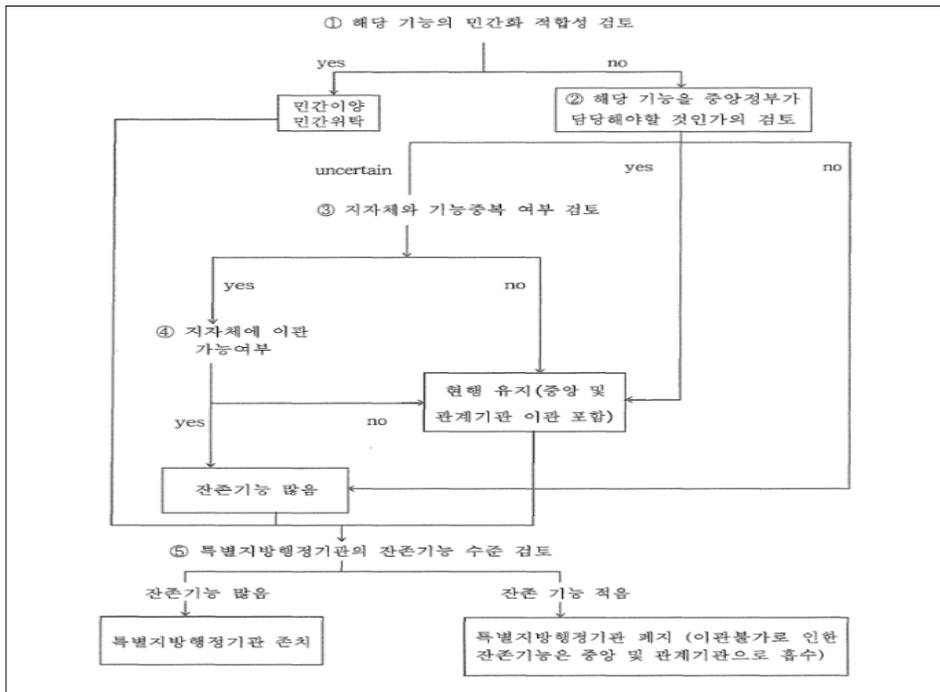
기능 \ 의견	경영진단('98)		행자부 주관 시도의견조사 ('99.2)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결과 ('02.12)	행자부 주관 시도의견조사 ('03.8)
	중앙팀	지방팀			
중소기업지원 (지방중기청)	· 지원·지도: 중진공 ·기타: 중기협 중앙회	·이양	·이양(기술지도· 시험검사 제외)	·경영지원기능: 이양 또는 위임 ·기술지원: 중진공, 중앙회위탁 ·시험검사: 민간위탁	·이양(시험검사, 민간위탁)
국도·하천 관리 (지방국도청)	이양불가	·위임(국도 건설제외)	·이양(국도건설제외)	·유자보수: 위임 ·계획·건설기능: 현행 유지	·이양(국도계획· 건설 기능 제외)
국유림 관리 (지방산림청)	·사유림: 이양 ·국유림: Agency화	·이양	·이양	·산불방지업무: 위임	·산불방지기능: 이양 ·기타기능: 현행 유지
보훈 (지방보훈청)	·선양·기념: 이양	·이양불가	·이양(선양·기념사 업 등)	·의료보호기능: 이양 ·보훈단체지원: 위임	·단체지원, 선양 기능: 이양 ·기타기능: 현행 유지
통계 (지방통계청)	·이양	·이양	·이양	·위임	·이양
환경 (지방환경청)	·위임	·지도단속: 이양 ·대기측정: 이양불가	·이양(특정사무 제외)	·환경보전, 지도단속, 상수원관리: 위임 ·측정기능: 이양	·원쪽 3가지 기능: 모두 이양
노동 (지방노동청)	·노사안정: 노동위원회 ·취업지원: 일원화	·양기능 이양	·이양(근로감독 등 제외)	·노사안정, 직업안정, 직업능력개발 기능: 이양 ·근로감독: 위임	·전면이양(고용 보험기능 제외)
항만·수산진흥 (지방해수청)	·이양불가	·이양	·이양	·연구대상 제외	·이양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부 자료(2005.4); 오재일 외(2008; 16)에서 재인용

4. 중앙 지방 간 기능재배분 판단 절차

- 앞에서 논의한 기능재배분 기준들을 적용할 때 적용 순서 및 판단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기능재배분에 관한 판단 절차는 5단계로 정리될 수 있음(소진광 외, 2002; 김영평 외, 2010; 이환범 외, 2012 등)
 - 1단계는 해당 기능의 민간화 적합성 검토
 - 2단계는 해당 기능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필요성 검토
 - 3단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중복 여부 검토
 - 4단계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가능성 검토
 - 5단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잔존 업무 수준 검토

<그림 2-2> 중앙 지방 간 기능재배분 판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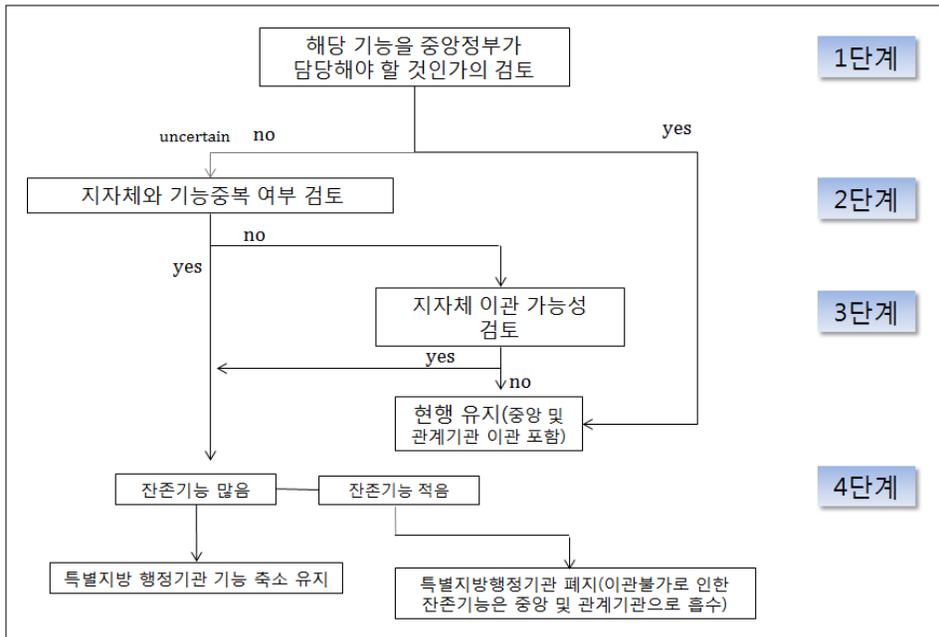


5. 소결

가. 중앙 지방 간 기능재배분 판단 절차

- 앞에서 논의한 모든 기준들과 절차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의 특행기관 지방이양 판단 기준은 총 4단계의 절차를 적용함
 - 본 장에서는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기 위하여 4단계 과정을 거치며 제1단계(중앙정부 공급 적정성 판단)와 제2단계(기능중복성 판단)에 대한 분석을 진행 후, 3단계와 4단계는 소결에서 이관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적용함
 - 1단계는 해당 기능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필요성 검토
 - 2단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중복 여부 검토
 - 3단계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가능성 검토
 - 4단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잔존 업무 수준 검토

<그림 2-3> 본 연구에서의 특행기관 지방이양 판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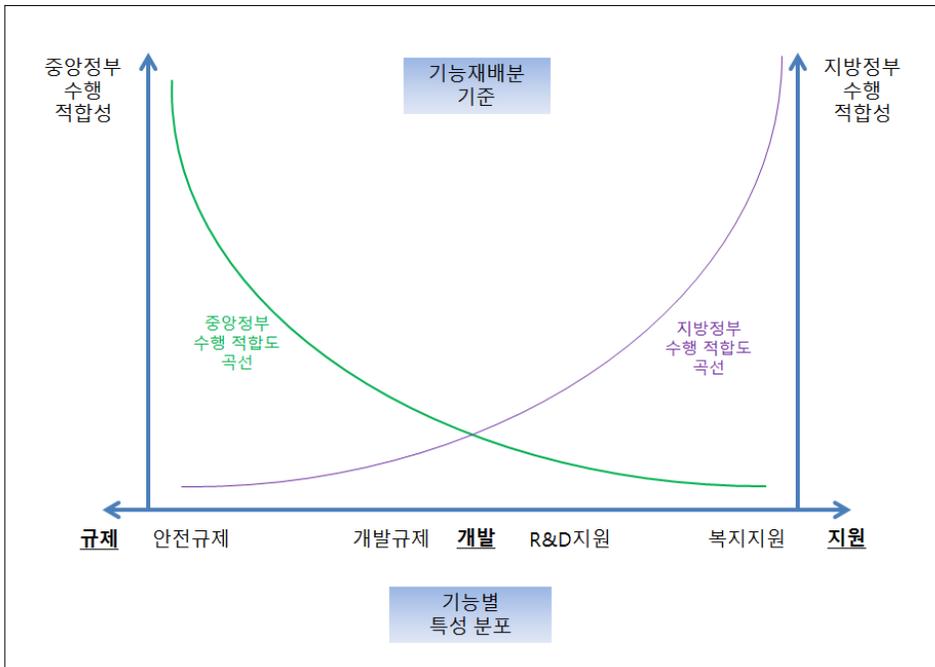


나. 판단 기준

- 앞에서의 판단 절차 중에서 1단계의 판단을 위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 지방 간 기능 배분 모형을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함
 - 중앙 지방 간 기능 배분 판단은 각 기능의 특징, 특히 수혜자 관점에서의 정부 역할에 관한 특징을 판단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중에서 어느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게 됨
 - 정부의 역할은 시장 실패에서 시작되며 시장이 생산을 실패하게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는데 재화와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 최적의 공급방식은 달라지게 됨
 - 재화와 서비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 분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정책 분류라고 할 수 있는 Lowi의 정책 분류에서는 정책을 크게 네 가지-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로 분류하고 있음(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
 - 규제정책은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정책이고, 분배 정책은 SOC 사업과 같은 개발정책을 의미하며, 재분배 정책은 복지정책을, 구성정책은 행정청의 구성 및 운영 정책임
 - 본 연구에서는 구성정책을 제외하고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에 대하여 기능재배분을 논리 모형을 구성하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해양수산 행정과 중소기업지원행정에 적용하고자 함
 -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은 좀 더 실무적인 용어로 ‘규제정책’, ‘개발정책’, ‘지원정책’으로 명명하여 사용하고자 함
 - 다만,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지원 기능 중에서도 개발 기능에 가까운 기능이 있을 수 있고, 규제 기능 중에서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동일 선 상에서 나열할 수 있음
 -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이 지원 기능에 가까운 경우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¹¹⁾, 개발 기능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정용덕, 2001)¹²⁾, 규제 기능에 가까운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음(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

<그림 2-4> 중앙 지방 간 기능 배분 판단 기준



- 11) 그러나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재배분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으나(정용덕, 2001), 반면, Lowi는 재분배정책은 강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앙의 우선권에 의한 정책결정은 큰 효율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음(Lowi, 1964; 한국유럽학회, 2011에서 재인용)
- 12) 지방정부가 계획하는 사업의 편익이 해당 지역 내로 얼마나 ‘내부화(internalize)’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중앙-지방간에 상이한 기능배분이 이루어짐(정용덕, 2001:4).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지방 하부구조(예: 고속도로 건설), 공익사업, 또는 관광사업 등은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게 되고, 광역으로 그 편익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과 대부분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 형식으로 운영하게 됨



제 3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현황

제3절 기관별 현황

제4절 소결

KRILA

제 3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대상

-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분석할 대상은 인천광역시에서 요청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표 3-1> 충남 이양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기관명	주요 기능	소재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기반시설 확충	인천 중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발전	인천 남동구

2. 분석 방법

-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각각의 현황을 조직 구조와 수행 기능별로 살펴보고, 이들 기관의 담당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청(광역) 및 인천광역시 자치구(기초)의 조직을 선정하고 각 기능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가장 우선되는 근거가 바로 기능 중복성이므로 중앙정부 하부 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기능의 중복성이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그림 3-1> 인천광역시 이양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분석 모형

구분	내용	비고
분석 대상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주 기이양 특행 기관 관련
	↓	
분석 방법	조직 현황: 기구, 인력 등	각 기관 홈페이지 등 참고
	수행 기능 현황: 과별 업무분장	
	지자체와 기능 비교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자체 BRM 기능 분류 체계 적용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현황

1.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의 일반적 현황

○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현황

-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1952년 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금창호 외, 2012)
- 지속적인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1961년과 1981년 등 몇 차례에 걸쳐 대폭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작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는 지속되어 옴(금창호 외, 2012)
-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후반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연도별 증가 추이의 변화는 크지 않음(주재복·강영주, 2016)
-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을 1차 기관과 2·3차 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105개 가운데 1차 기관이 248개이고 2·3차 기관이 4,902개로 나타남

<표 3-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유형별	해당 기관	합계	기관수		
			1차	2차	3차
		5,105	236	815	4,054
고용노동행정기관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지청/출장소 등	47	6	41	0
세무행정기관	지방국세청, 세관, 세무서, 세관감시소 등	195	40	136	19
공안행정기관	지방교정청, 고등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2,693	83	447	2,163
현업행정기관	지방우정청, 우체국, 우편집중국, 우편물류센터 등	1,858	0	9	1,849
기타행정기관	지방보훈청, 지방조달청, 지방병무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312	107	182	23

자료: 행정안전부, '부처별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자료

<표 3-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변화 추이

구분 \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17
총계	7,004	3,668	5,115	5,150	5,105
노동행정기관	46	46	47	47	47
세무행정기관	174	177	183	193	195
공안행정기관	3,920	1,620	2,548	2,641	2,693
현업행정기관	2,502	1,432	1,995	1,967	1,858
기타행정기관	362	393	342	302	312

자료: 행정안전부, '부처별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자료

2.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현황

○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정부 소속의 1·2차 기관 16개임
- 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전국에 4개가 설치(기관장 직급은 고공단 나등급)되어 있고, 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전국에 7개(기관장 직급은 4급)가 설치되어 있음

<표 3-4>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현황

부처명	유형	기관명	기관수			기관장 직급
			1차	2차	3차	
국가보훈처	기타 행정기관	보훈지청 (경기남부, 인천, 경남동부)		3		3·4급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행정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검사소 (강릉, 자성대, 신선대, 양산, 신히, 통영, 감천항, 의왕, 광주, 인천국제공항, 평택, 광양, 군산, 인천항, 용인)		15		5급
법무부	공안 행정기관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수원)		4		5급
법무부	공안 행정기관	지방교정청구치소 (서울, 서울남부, 동부, 부산, 수원, 인천)		6		고공단 나등급
법무부	공안 행정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 수원, 제주)	3			3·4급
법무부	공안 행정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 서울, 부산)	3			고공단 나등급
보건복지부	기타 행정기관	질병관리본부국립검역소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마산, 김해, 통영, 울산, 포항, 동해, 제주)		12		4급
보건복지부	기타 행정기관	질병관리본부국립검역소 (인천공항)		1		고공단 나등급

부처명	유형	기관명	기관수			기관장 직급
			1차	2차	3차	
해양 수산부	기타 행정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부산, 인천, 여수, 마산)	4			고공단 나등급
관세청	세무 행정기관	세관 (인천)	1			고공단 가등급
조달청	기타 행정기관	지방조달청 (서울, 인천)	2			고공단 나등급
통계청	기타 행정기관	지방통계청사무소 (서울, 인천, 수원, 안동, 춘천, 목포, 전주, 제주)		8		4·5급
병무청	기타 행정기관	지방병무청지청(인천)		1		4급
경찰청	공안 행정기관	지방경찰청 (서울, 부산, 경기남부, 인천)	4			치안정감
중소벤처 기업부	기타 행정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인천, 대전충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7			4급
기상청	기타 행정기관	지방기상청기상대 (인천, 안동, 울산, 창원, 목포, 춘천, 홍성)		7		5급

자료: 행정안전부, '부처별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자료에서 정리함

제3절 기관별 현황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가.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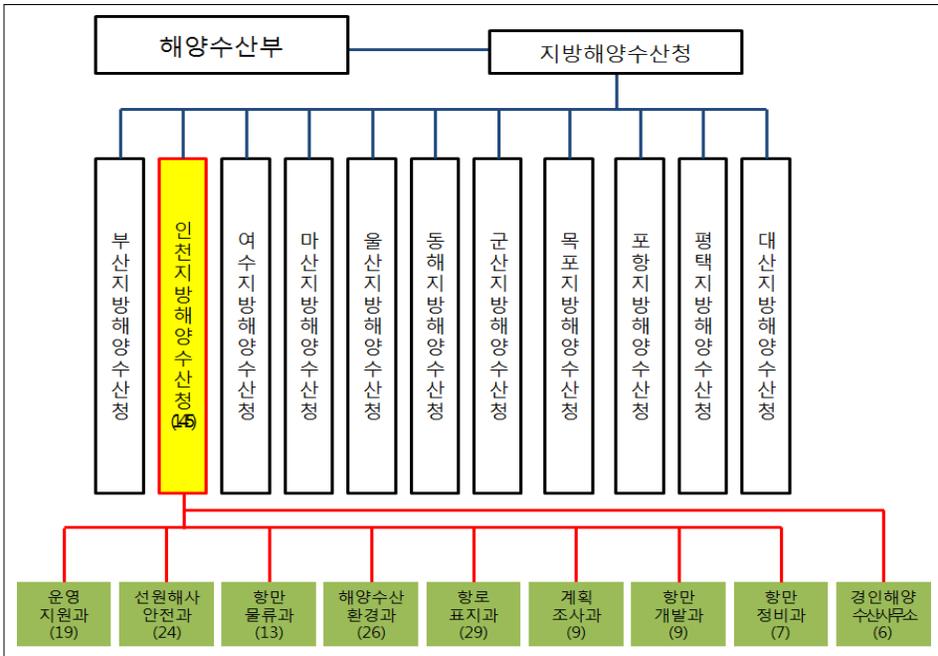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중구에 위치하여 해상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기능 개선, 입출항 선박 관제, 항만시설관리, 수산기술 지도 보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등 13개 시·군, 안산시 단원구 일부가 관할구역이 됨
 - 무역항(인천항, 경인항), 연안항(용기포항, 연평도항), 어항(강화군 어유정항, 옹진군 장봉항, 덕적도항, 울산항, 선진포항, 소래포구항)을 관할함

<그림 3-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구체적인 조직도와 인력 및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운영지원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등 총 8개 과에 경인해양수산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18년 현재 145명이 근무하고 있음

<그림 3-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조직



자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2018.5.30. 접속)
 주: ()은 인원수

<표 3-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력 및 예산

구분	인력	예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 145 명	197,976백만원 (2016.9월 현재)

자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2018.5.30. 접속)
 주: ()은 인원수

나. 수행 기능 현황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각 조직 구성과 업무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운영지원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해양환경과, 항만공사과, 해양교통시설과에서 선박계 업무, 항문국 통제, 해사안전감독, 항만시설 지정, 순찰선 업무, 대산항 순찰 및 개항단속업무, 항만공사 건설, 항로 표시선 등대호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표 3-6>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조직구분	업무분장
운영지원과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보안 • 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심사, 보존 등 문서관리 • 청사 및 시설의 관리.방호 • 청내 용품 조달 • 시험의 시행 • 예산.결산 및 심사평가 • 세입의 부과.징수 • 비상계획.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업무 • 기타 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선원해사 안전과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및 지도 • 해상운송사업관계 단체의 지도 • 해상운임에 관한 사항 • 항로의 개척.지도 • 선박의 등록 •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교부 • 선원보험 및 선원노동쟁의 조정 • 선원의 복지 • 선원근로감독 • 선원 외국취업 • 선박 톤수측정에 관한 업무 • 항만국통제 및 선박승선점검 • 사업장 선박안전진단 및 인증심사 • 국적외항선 특별점검
항만물류과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운영계획의 수립 •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

조직구분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운영단체의 지도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지도 • 항만시설·장비 등의 관리·운영 • 도선사의 지도 • 항만보안 • 정보화추진 관련업무 • PORT-MIS/EDI운영관리 • 경인·영동권역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 정보통신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 • 홈페이지 운영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 환경과 (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단속 및 질서유지 • 해역이용협의 및 특별관리해역의 관리 • 방치폐선 및 항내 침몰선 제거 • 관공선 관리 운영 • 해양감시대관리운영 • 항계내 선박수리허가 및 행사허가 • 공유수면 매립 및 접사용료
<p style="text-align: center;">항로표지과 (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 항로표지용품의 수급 • 항로표지의 관리 및 특수항로표지의 설치 • 항로표지의 설치·폐지 및 위치변경등의 고시 •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설계 및 시공감독 • 항로표지용 선박의 관리·운영 • 사설특수항로표지의 설치·폐지·변경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관리의 위탁승인 및 감독 • 인천항 조류신호시스템 관리 및 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계획조사과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관리청항만공사 • 항만공사 관련 어업보상 업무 • 항만기본계획 관련 협의 및 용역 관리 • 지자체 보조금 관련 업무 • 공유수면 접·사용 및 매립 관련 업무 • 공사용 재료의 시험을 위한 시험실 운영 및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항만개발과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북항 개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인천북항 개발에 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시공감독 • 인천북항 시설공사의 공정, 안전관리 • 인천북항 항만공사용 기계 및 장비의 운용과 유지, 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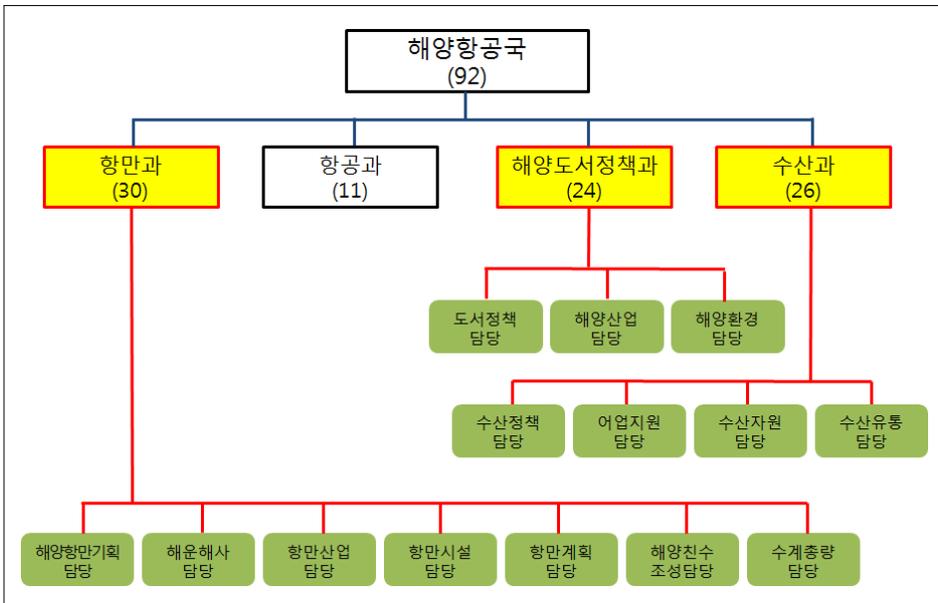
조직구분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신항개발(정부재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인천신항개발(정부재정)에 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시공감독 • 인천신항 시설공사의 공정, 안전관리 • 인천신항 항만공사용 기계 및 장비의 운용과 유지, 수선
<p>항만정비과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공사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량 및 설계 • 항만시설공사의 공정·시공감독·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 항만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사용 및 장애물의 이전과 그에 따른 보상 업무 • 항만배후 수송시설의 계획수립·시공감독 및 안전관리 • 항만시설장비의 설치·신고·검사 • 항만방재 업무 • 항만재개발 관련 국가재정의 집행 및 사업관리 • 갑문시설의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 마리나항만사업의 실시계획승인·사업집행 및 사업관리 • 국가연안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시행 • 어항공사의 설계·집행·시공 감독 및 준공 확인 • 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p>경인해양 수산사무소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부두운영(운항회의 포함) 관리 • 항만운송사업체 지도 및 감독 • 개항질서법 운영 및 개항단속 • 관공선 관리 운영 및 지도 • 선박통항안전 및 선박 점검 • 입출항 신고수리 및 항만시설 사용허가 • 인천신항 항만공사용 기계 및 장비의 운용과 유지, 수선

다. 지자체 해당 조직

1) 광역지자체

- 인천광역시에서는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해양항공국의 항만과, 해양도서정책과, 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림 3-4> 인천광역시 해양수산국 조직도



자료: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2018.5.30. 접속
 주: ()은 인원수

<표 3-7> 인천광역시 관련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항만과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항만종합기획 • 인천해양수산발전고위정책협의회 운영 • 인천항 발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국제크루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 모항유치, 신규항로 개설 •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운영 • 크루즈 마케팅 및 외국선사 초청 팸투어 추진 • 바다의 날 개최 • 크루즈 기항지 인프라 구축 • 카페리 활성화 시책 추진 • 아라뱃길~한강 뱃길 개통 • 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분원 건립에 관한 사항 • 해양박물관 건립(유물수집운동 전개) • 갑문매립지 친수공간 관리 업무 • 지역물류기본계획 • 지역물류시행계획 • 국제항로표지협회 컨퍼런스 개최 • 인천 해양, 항만뉴스센터 운영 • 국제물류 박람회,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물류추진업 • 물류연구회 지원 • 공설CFS 지원 •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지원 및 민원 • 경인아라뱃길 업무 총괄 •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조정 업무 • 경인아라뱃길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 • 라이프아파트 집단민원 등 지원 관리 - 항동지역 삶의 질 개선 프로젝트(용역 등) • 해양경계철책 정비 총괄에 관한 업무 • 바닷가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연안관리 및 연안침식 관리에 관한 업무 • 항만기본계획관련 업무 총괄 • 항만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총괄 • 북항관련 제반업무 총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 총괄 • 항만기본계획 관련 업무 • 항만(북항)의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업무 • 북항 도시계획시설(항만)관련 제반 업무 • 공유수면(지정항만의 해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 인천 수리조선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남항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인가 • 북항 북성포구 준설매립 협의·조정 • 남항 우회연결 도로개설 협의·조정 •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및 이전대책 •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 인천 신항 건설 관련 • 해양 친수도시 조성사업 검토
해양도서정책과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발전기본계획 추진 및 관리 • 애인섬 만들기 사업 추진(추진상황 관리, 홍보, 섬 프로젝트 분과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점검 및 시행 • 접경지역 지원사업 업무 추진 • 시책사업(민북및서해5도대책사업등)업무추진 • 초광역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업무 •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및 지원 업무 -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 사업 추진 • 접경지역개발사업 계획 관련 업무 • 애인섬 만들기 시비지원 사업(걷기, 섬 포럼 등) •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 섬 활성화 센터 설립준비 등 • 행안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록 업무 • 도서지역 접근성 향상 방안 추진 등 • 해양레저·연안크루즈 구성 등 해양발전계획 수립 •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정책수립 조정 시행에 관한사항 • 해양산업육성 관련 조례 관리 •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 육성대책 및 시행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 여객선 안전사고 대응 및 지원(특별수송대책 포함) • 여객선 운임지원 - 도서민, 타시도민, 덕적+자월 • 해양수산부 소관 해수욕장 관리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록 및 지원 등 • 극지인프라 구축 및 연구활동 확산 지원(포럼 및 체험행사 등) • 여객선운임 지원(인천시민, 출항민, 군장병면회객, 명절객) • 여객운임 관련 전산시스템 지원 및 관리 •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 관리 •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 등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 YSLME(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 프로젝트 •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 무인도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 해양환경 정화선운영·관리 사무총괄 • 해양시설 등록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무 • 해양오염방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업무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업무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업무 • 다중이용해변 해수질 검사 등 관리 업무 • 어업지도선 항해장 • 해양환경정화선 관리·운영업무 • 선박검사, 수리 및 입·출항 상황보고 업무 • 해양환경정화선 승무원 복지 지원 •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 무인도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수산과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관업무 • 어업지도 기본계획 수립 •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업무 • 범칙어선 행정처분 • 어장확장에 관한 업무 • 어업인안전교육 • 어업지도선 운영에 관한 업무/어선 안전조업지도 업무/연평 안전조업 T/F팀 운영/어선감척 사업 • 어업허가 및 신고 처분 등에 관한 업무 • TAC 제도에 관한 업무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 낚시어선 지도 점검 등 • 내수면, 어장관리, 자율관리어업 등 • 수산종자 관리사업 추진(매입방류, 효과조사) •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 • 어업권 관리 업무(면허, 육상양식, 종묘생산어업 등) • 인공어초시설 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 어초어장 사후관리 사업 • 인공어초 적지조사 및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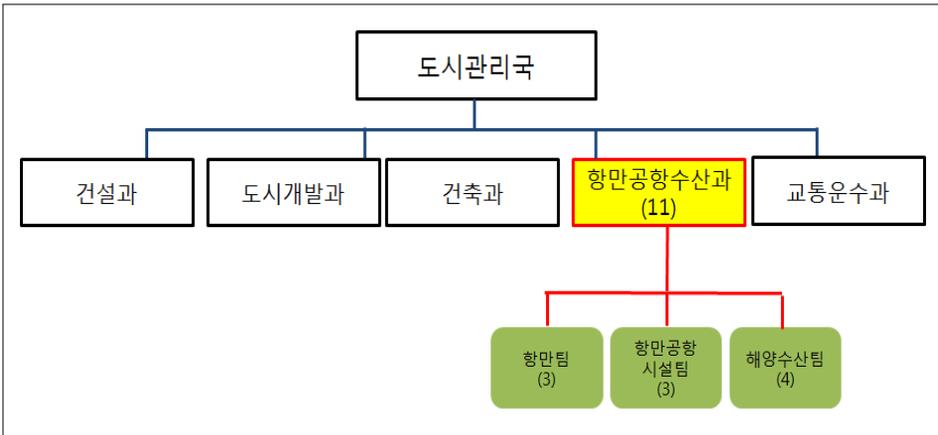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어초 일반 및 어초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불법어업 방지시설 사업관리 • 기타 수산관련(PM사업 관리) 토목업무 전반 • 수산유통사업 추진 등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사후관리 • 수산물 유통사업 추진 • 수산계고교 특성화지원

자료: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주: 2018년 기준; ()은 인원수

2) 기초지자체

- 인천 중구에서는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과의 항만팀, 항만공항시설 팀, 해양수산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림 3-5> 인천광역시 중구청 항만공항수산과 조직도



자료: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2018.6.11. 접속
 주: ()은 인원수

<표 3-8>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련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p>항만팀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항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관련 사항 • 선착장 관리(시설확장 제외) • 월미도 갑문 매립지 개방에 따른 사업추진 • 북성포구매립 및 영종준설토 관련 사항 • 항만관련 각종 업무 추진(내항제외) • 도서민 여객선 운인지원(무의해운) • 연안부두 바다쉼터 관리 • 연안동 화물전용도로 개설 사업 • 인천 내항 재개발에 관한 행정 지원 • 항만관련 기관 및 단체 협조체계 구축 유지 • 중구지역발전위원회 (내항분과위원회) 관리 • 물류창고업 등록관련 업무
<p>항만공항시설팀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업무 추진 • 신흥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 추진(주민역량강화 관리 운영 등) • 공공주택(행복주택 등) 관련 업무 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업무 • 지방 및 어촌정주향 관리 • 도선장(잠진도) 관리 • 연안 및 공유수면 관리업무 • 해양오염 관련 업무(유류사고) • 공항관련 업무 종합 계획 수립 • 소음대책위원회 관련 업무
<p>해양수산팀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업무 총괄 • 어업피해보상 및 진정, 건의 민원 해결 • 수산진흥사업 계획수립 • 어업면허업무 조정(어촌계) • 해양수산사업 업무 추진 •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및 확정 • 어업권(어장) 및 어업면허 관리 업무 • 어업인 용자 사업(농어촌 진흥기금 등) • 관리수면 지정 관리 •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어촌관광개발업무 - 수산물 홍보지원 사업 • 안전조업 지도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연근해장비지원) •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 •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 • 수산물가공업 등록 및 관리 • 수산물유통 - 원산지표시 업무 -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등 • 낚시터업 관리 • WTO/FTA 등 해양수산분야 협정관리 • 염제조업 관리 • 어선등록 관리 업무 • 연안어업 허가 및 신고 •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보고 관리 • 어획물운반업 등록관리 업무 • 연근해어업관련 업무 추진 • 낚시어선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낚시어선업 신고폐업 등

자료: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주: 2018년 기준; ()은 인원수

라. 지자체와 기능 비교 현황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는 해양수산기능은 광역지자체인 인천광역시청과 기초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도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청 해양항공국 항만과 및 해양도서정책과, 수산과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관리국의 항만공항수산과에서도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3-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체단체의 기능 비교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련법령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해양 수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료	항만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 총괄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공유수면(지정항만외 해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항만 공항 시설팀	염안 및 공유수면 관리업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점사용	계획 조사과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지도 기본계획 수립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업무 법적어선 행정처분 어장확장에 관한 업무 어업안전교육 어업지도선 운영에 관한 업무/어선 안전조업지도 업무/연평 안전조업 T/F팀 운영/어선감척 사업 어업허가 및 신고 처분 등에 관한 업무 TAC 제도에 관한 업무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사업 남시어선 지도 점검 등 내수면, 어장관리, 자물관리어업 등 수산종자 관리사업 추진(매입방류, 효과조사) 수산 증양사업 추진 	해양 수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피해보상 및 진정, 건의 민원 해결 수산진흥사업 계획수립 어업면허업무 조정(어촌계) 해양수산사업 업무 추진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및 확정 어업권(어장) 및 어업면허 관리 업무 어업인 용자 사업(용어촌 진흥기금 등) 관리수면 지정 관리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어촌관광개발업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선법(시행규칙) 수산법 수산자원관리법 인공어초설치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근해어업 관리육성	계획 조사과	항만공사 관련 어업보상 업무 지자체 보조금 관련 업무	수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공사 관련 어업보상 업무 지자체 보조금 관련 업무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련법령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권 관리 업무(면허, 육상양식, 종묘생산어업 등) 인공어초시설 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어초어장 사후관리 사업 인공어초 적지조사 및 실문조사 인공어초 일반 및 어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불법어업 방지시설 사업관리 기타 수산관련(PM사업 관리) 토목업무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홍보 지원 사업 안전조업 지도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연근해장비지원)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 수산물가공업 등록 및 관리 수산물유통 - 원산지표시 업무 - 수산특산물 품질 인증 등 납시터업 관리 WTO/FTA 등 해양수산분야 협정 관리 멸종조업 관리 어선등록 관리 연안어업 허가 및 신고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보고 관리 어획물운반업 등 	
증기능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련법령	
	증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수산정책	어장이용 및 어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공사의 설계·집행·시공 감독 및 준공 확인 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수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관업무 	항만 공항 시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및어촌경주 항 관리 도선장(잠진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법 수산법
		수산물 유통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수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유통사업 추진 등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사후관리 수산물 유통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수산정책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수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계고 특성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	항만물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운영계획의 수립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 항만운영단체의 지도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등록 및 지도 항만시설장비 등의 관리·운영 도선사의 지도 항만보안 정보화추진 관련업무 	항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만중합기획 인천해양수산발전고위정책협의회 운영 인천항 발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국제크루즈 산업 육성 종합계획 크루즈 모항유지, 신항로 개설 크루즈 산업발전위원회 	항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항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관련사항 선착장 관리(시설화장 제외) 웰미도 갑문 매립지 개방에 따른 사업추진 부성포구매립 및 영종준설도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항만법

구분(BRM 기준)	인척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련법령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RT-MIS/EDI운영관리 • 경인·영동권역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 정보통신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리 • 항만시설공사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량 및 설계 • 항만시설공사의 공정·시공 감독·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 항만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사용 및 장애물의 이전과 그에 따른 보상 업무 • 항만배후 수송시설의 계획·수립·시공감독 및 안전관리 • 항만시설장비의 설치·신고·검사 • 마린나항만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사업진행 및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 운영 • 크루즈 마케팅 및 외국선사 초청 뱃투어 추진 • 바다의 날 개최 • 크루즈 기항지 인프라 구축 • 카베리 활성화 시책 추진 • 아라뱃길·한강 뱃길 개통 • 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분원 건립에 관한 사항 • 해양박물관 건립(유물 수집운동 전개) • 감문매립지 친수공간 관리 업무 • 지역물류기본계획 • 지역물류시행계획 • 국제항로표지협회 컨퍼런스 개최 • 인천 해양, 항만뉴스 센터 운영 • 국제물류 박람회,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물류추진사업 • 물류연구회 지원 			
증기능	항만 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북항 개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인천북항 개발에 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시공감독 • 인천북항 시설공사의 공정, 안전관리 • 인천북항 항만공사용 기계 및 장비의 운용과 유지, 수선 • 인천신항개발(정부제정) 시 	항만 정비과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련법령	
	증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인천신항개발(정부재정)에 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시공감독 • 인천신항 시설공사의 공정, 안전관리 • 인천신항 항만공사용 기계 및 장비의 운용과 유지, 수선		• 공설CFS 지원 •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지원 및 민원 • 경인아라뱃길 업무 총괄 •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조정 업무 • 경인아라뱃길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 • 라이프아파트 집단민원 등 지원·관리 - 항동지역 삶의 질 개선 프로젝트(옹역 등) • 해양경제정책 정비 총괄에 관한 업무 • 항만기본계획관련 업무 총괄 • 항만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총괄 • 부항관련 재반업무 총괄			
		계획 조사과	• 비관리청항만공사 • 항만기본계획 관련 협의 및 용역 관리					
	해운항만 정책 및 지원	항로 표지과	•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 항로표지용품의 수급 • 항로표지의 관리 및 특수항로표지의 설치 • 항로표지의 설치·폐지 및 위치 변경등의 고시 •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기술 검토·설계 및 시공감독 • 항로표지용품 선택의 관리·운영	항만과			• 항만기본계획 관련 업무 • 항만(북항)의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업무 • 북항 도시계획시설(항만)관련 제반 업무 • 인천 수리조선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 내항·남항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인가	• (해당없음)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련법령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특수항로표지의 설치·폐지·변경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시설항로표지 준공확인·관리 및 위탁승인 및 감독 인천항 조류신호시스템 관리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항 북성포구 준설매립 협의 조정 남항 우회연결 도로개설 협의 조정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및 이전대책 인천 신항 건설 관련 해양 전수도시 조성사업 검토 			
증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방재 업무 항만개발 관련 국가계정 집행 및 사업관리 감문시설의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항만 정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부두운영(운항회의 포함) 관리 항만운송사업체 지도 및 감독 개항질서법 운영 및 개항단속 관공선 관리 운영 및 지도 선박통항안전 및 선박 점검 입출항 신고수리 및 항만시설 사용허가 인천신항 항만공사용 기계 및 장비의 운용과 유지, 수선 	경인 해양수산사무소				
해운항만 관련 하천정비 관리	연안관리 정비사업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항단속 및 질서유지 해양이용협의 및 특별관리 지역의 관리 방파제시설 및 항내 침몰선 제거 관공선 관리 운영 해양감시대관리운영 항계내 선박수리허가 및 행 	항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닷가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연안관리 및 연안침식 관리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법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련법령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사허가					
연안관리 정책	항만 정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안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법
해양보전	해양보전 관련 관리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 도시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발전기본계획 추진 및 관리 애인섬 만들기 사업 추진(추진상황 관리, 홍보, 섬 프로젝트 분과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점검 및 시행 접경지역 지원사업 업무 추진 시책사업(민복및서해 5도대책사업등)업무 추진 초광역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업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및 지원 업무 - 서해 5도 주민생활 지원 사업 추진 접경지역개발사업 계획 관련 업무 애인섬 만들기 시범지원 사업(걷기, 섬 포럼 등)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환경관리법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련법령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중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 활성화 센터 설립 준비 등 • 행안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록 업무 • 도서지역 접근성 향상 방안 추진 등 • 해양레저·연안크루즈 구성 등 해양발전계획 수립 •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정책수립 조정 시행에 관한사항 • 해양산업육성 관련 조례 관리 • 마린나항만 관립 사업 육성대책 및 시행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 여객선 안전사고 대응 및 지원(특별수용대책 포함) • 여객선 운임지원 - 도서민, 타시도민, 덕적+ 자월 • 해양수산부 소관 해수욕장 관리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록 및 지원 등 • 극지인포라 구축 및 			

구분(BRM 기준)	증기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련법령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활동 확산 지원 (포럼 및 체험행사 등) 여객선운임 지원(인천 시민, 출항민, 군장병 면회객, 명절객) 여객운임 관련 전산시스템 지원 및 관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 관리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갯벌 등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YSLME(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 프로젝트 인천염바다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무인도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해양환경 정화사업·운영·관리 사무총괄 해양시설 등록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무 해양오염방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업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업무 해양생태계보전협력 			

구분(BRM 기준)	인친지방해양수산청		인친광역시청		인친광역시 중구청		관련법령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중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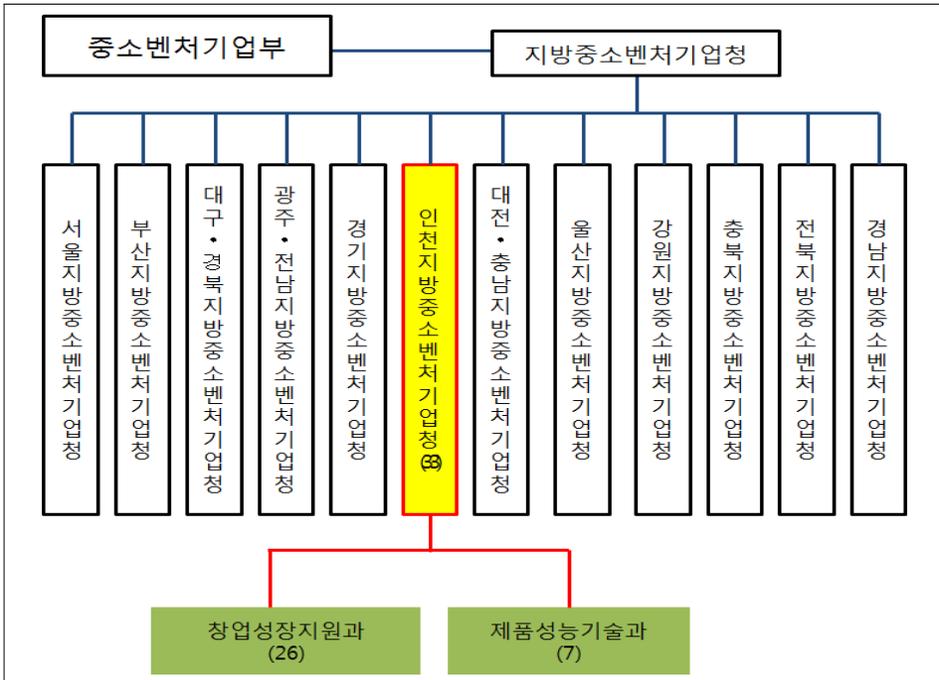
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인천광역시 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과 관할 지역 내의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중소기업청 소속의 2급지청 특별지방행정기관임

가. 조직 현황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산하에 창업성장지원과와 제품성능기술과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도와 인력 및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그림 3-6>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직도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2018년 5.28 방문
 주: ()은 담당 인력 수

<표 3-10>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력 및 예산

구분	인력	예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총 33 명	-

자료: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부 자료

주: 2018년 기준

나. 수행 기능 현황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각 조직별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창업성장지원과, 제품성능기술과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시책 집행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사무 조정·협력, 공산품 및 공업재료의 시험·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3-1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창업성장지원과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집행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사무 조정·협력 •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 •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관련 각종 간담회의 개최 및 운영 •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 지역 청소년 등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고양에 관한 사항 •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실험실창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원 및 신기술창업 인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청소년·대학생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동아리 및 창업 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창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창업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신기술 창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 창업자의 법인 설립 및 공장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도 및 감독 • 지역 창업자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부담금·보조금 및 세제 지원과 그 안내에 관한 사항 • 창업보육센터 우수 졸업·졸업예정 기업의 산업기술단지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창업보육센터,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 지방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 인사·경리·문서·청사관리 및 설비의 사용허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 •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관한 사항 • 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구매지원담당자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구매 촉진대회 및 구매상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 장애인기업·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수출기업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해외시장 개척인력의 선정 및 현장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외규격 인증 획득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과 공업고등학교 간 연계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실태조사 및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 산업체·인력공급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p>영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지역 중소기업 간 채용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
제품성능기술과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학·연구소 등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방지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과제 및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산품 및 공업재료의 시험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 계량·계측기의 교정에 관한 사항 • 시험방법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 시험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중소벤처기업부 보유 장비의 이용 개방에 관한 사항 •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조사에 관한 사항 •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기술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자료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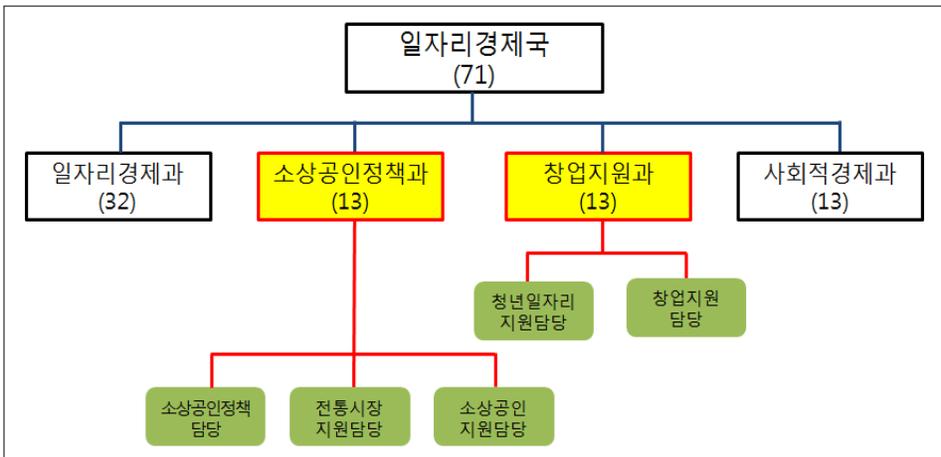
주 : 2018년 기준

다. 지자체 해당 조직

1) 광역지자체

-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일자리경제국의 소상공인정책과와 창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림 3-7>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국 조직도



자료: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 2018년 기준

<표 3-12> 인천광역시 관련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소상공인정책과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시책 개발 • 인천신용보증재단 협업 •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운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운용 등 •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지역선도, 문화관광형, 골목형시장 등) • 상인교육관 지원 및 운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문행사(명절 민생탐방 등)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계획 수립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 전통시장 안전시설 점검 •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업무 • 온누리상품권 유통 •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운영 • 금융소외계층 자금지원 업무 • 대부업, 담배, 복권
<p>창업지원과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자리지원 업무 총괄 • 청년일자리 관련 종합계획 수립 -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 Go-Together 같이 가 잡(Job) 프로젝트 • 청년인턴제사업 추진 •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 벤치마킹, 청년의무고용확대 등 추진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 취·창업 진로지도센터 운영지원 •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 벤치마킹 추진 • 토론회, 워크숍 추진 • 국비지원사업 총괄(행안부)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 청년고용통계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관리, 운영지원 • 청년창업 챌린지사업 • 창업 페스티벌 • 우리함께 창업토론회 개최 • 인천창업허브 구축 • 자금 지원(액셀러레이터, 팁스, 펀드 조성) •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원 • 창업카페 조성 및 운영 • 창업 동아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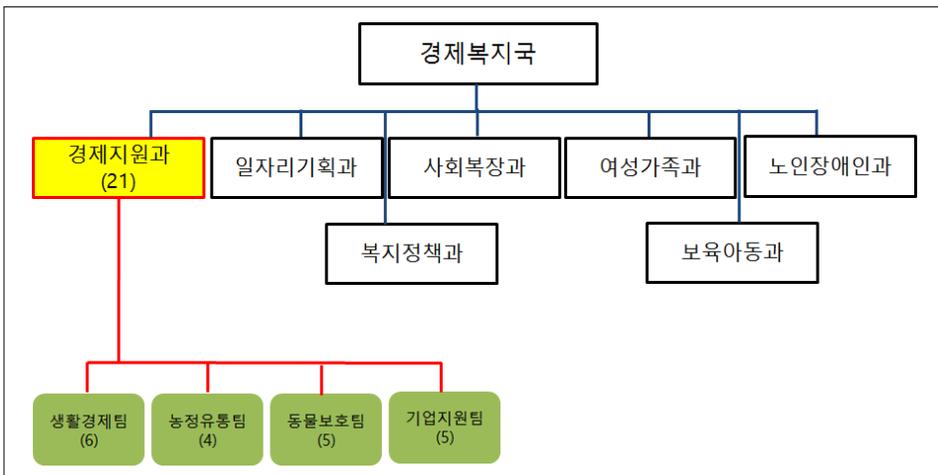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센터 지원 • 창업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관리: 대학 등 민간창업기관과의 협력 추진 • 창업지원 사업 발굴 및 시행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 • e-다누리 창업센터 지원 • 시니어 창업스쿨 • 기업가 정신교육

자료: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주: 2018년 기준; ()은 인원수

2) 기초지자체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경제복지국의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과 기업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림 3-8>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국 조직도



자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홈페이지
 주: 2018년 기준; ()은 인원 수

<표 3-1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련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생활경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골목형) 업무 • 소상공인 진흥공단 업무(상인대학, 이벤트, 공동마케팅 등) • 유통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 전통시장·대규모점포, 상인회 등록 및 관련 업무 • SSM 사업현황 관리 및 점검 등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업무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관리 • 전통시장 노점실명제 운영 • 시장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례·규칙 •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부평시장발전협의회 운영 관리 • 소상공인지원업무 추진 • 물가대책위원회 및 물가안정관리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사업 • 부정경쟁방지 및 소비자 보호활동 업무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전통시장 민원업무 처리 • 시설현대화사업 및 구조물 정비사업 • 전통시장 및 지하도상가 안전관리 • 부평자유시장 정비사업
기업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지원 총괄계획 수립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총괄 • 기업인 교류지원사업 관련 업무 •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 • 경제단체 교류지원 업무 • 수출통상촉진단 및 국제통상협력 업무 • 공장창업계획 및 설립 승인, 공장등록 • 무등록공장 지도·점검, 공장 총허용량 업무 • 기술지원(산업디자인개발, 금형개발, 해외규격인증) 업무 • 중소기업 규제개혁 발굴 및 건의 • 부평산단 관련 업무 (구조고도화, 혁신산단 등) • 계량기(질량계) 관련 전반적인 업무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등록(변경, 폐쇄) 업무 • 공장설립, 승인, 등록업무 • 공산품 원산지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 업무 • 중소기업기술지원단(기술지도) 업무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업무 • 해외자매·우호도시 등 국제교류 협력업무 • 중소기업 규제개혁 관련 업무 • 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조례 •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업무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관련 업무 • 해외박람회(단체·개별) 관련 업무 •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업무 • 포상계획 수립 및 중소기업인상 업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관련 업무 • 공산품 원산지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 업무 • 충무계획(제조업 분야) 관련 업무 •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및 규칙 •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소기업 무료번역·작문 서비스 업무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현황 관리 • 중소기업인상 외 포상 관련 업무 • 이노카페 운영 및 시설(우림A214, B121)관리 • 유망중소기업·품질우수제품 업무 • 전통공예품 관련 업무

자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홈페이지

주: 2018년 기준; ()은 인원수

라. 지자체와 기능 비교 현황

- BRM 상의 중기능 분류를 기준으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인천광역시 관련 조직 현황을 개략적으로 비교하였음

<표 3-14>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차단체의 기능 비교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련법령
대기능	조직	조직	조직	
중기능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중소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집행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 사무 조정·협력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관련 각종 간담회의 개최 및 운영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의 확인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지역 청소년 등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고장에 관한 사항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실용실창업·실용실창업 지원사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및 신기술창업 인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청소년·대학생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등 교육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일자리지원 업무 총괄 청년일자리 관련 종합계획 수립 -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 Go-Together 같이 가 잡(Job) 프로젝트 청년인턴제사업 추진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 벤처마킹, 청년의무 고용확대 등 추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취창업 진로지도센터 운영지원 취업을 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벤처마킹추진, 토론회, 워크숍추진 국비지원사업 총괄(행안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지원 총괄계획 수립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 경제단체 교류지원 업무 중소기업 규제개혁 발굴 및 건의 부평산단 관련 업무 (구조고도화, 혁신산단 등) 포상계획 수립 및 중소기업 인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기술투입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업지원	창업성장지원과	창업지원과	기업지원팀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련법령
	조직원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동아리 및 창업 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창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창업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신기술 창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수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 창업자의 법인 설립 및 공장·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도 및 감독 • 지역 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부담금·보조금 및 세제 지원과 그 안내에 관한 사항 • 창업보육센터 우수 졸업·졸업예정 기업의 산업기출단지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보육센터,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 지방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인사·경리·문서·청사관리 및 설비의 사용허가 등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통계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관리, 운영지원 • 청년창업 챌린지사업 • 창업 페스티벌 • 우의함께 창업토론회 개최 • 인천창업허브 구축 •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원 • 창업카페 조성 및 운영 • 창업 동아리 지원 • 창업보육센터 지원 • 창업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관리 ; 대학 등 민간창업기관과의 협력 추진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련법령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관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 •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대 인제도에 관한 사항 • 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구매지원담당자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구매 촉진대회 및 구매 상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 장애인기업-소기업 확산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과 공업고등학교 간 연계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실태조사 및 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 산업체 인력공급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부연구청		관련법령
	대기능	증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지역 중소기업 간 채용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자영업 진설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 			
	공장관련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기업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등록공장 지도·점검, 공장 총허용량 업무 공장등록(변경, 폐쇄) 업무 공장설립, 승인, 등록업무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현황 관리 공장창업계획 및 설비 승인, 공장 등록 공산물 원산지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 업무 공산물 원산지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련법령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정책 개발 • 인천신용보증재단 협업 •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운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운용 등 • 특성과 시장 육성사업 (지역선도, 문화관광형, 품목형시장 등) • 상인교육관 지원 및 운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문행사(명절 민생탐방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계획 수립 • 전통시장 시설행태화 사업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 전통시장 안전시설 점검 •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업무 • 온누리상품권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성화시장(문화관광형, 품목형) 업무 • 소상공인 진흥공단 업무(상인대학, 이벤트, 공동마케팅 등) • 유통업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상인회 등록 및 관련 업무 • SSM 사업현황 관리 및 점검 등 •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업무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관리 • 전통시장 노점실명제 운영 • 시장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 •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특별한 조례·규칙 •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부평시장발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점가 육성 등을 위한 특별법 	
지역경제	<p>창업 성장 지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실행조사에 관한 사항 	<p>소상공인 정책과</p>	<p>생활 경제팀</p>			
증기능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련법령	
	대기능	증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대행마트 및 SSM (기업형 슈퍼마켓) 소상공인 특별보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운영 관리 소상공인지원업무 추진 물가대책위원회 및 물기안정관리 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 공동 배송 센터 운영지원 사업 부정 경쟁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활동 업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소상공인 지원 조례 진통시장 민원업무 처리 시설현대화사업 및 구조물 정비 사업 진통시장 및 지하도상가 안전관리 부평 자유시장 정비사업 		
증기능	산업 및 중소기업 금융관련 지원	산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운영 금융소외계층 자금 지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업무 중소기업운전자 금융자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 		

구분(BRM 기준)	인cheon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cheon광역시청		인cheon광역시 부평구청		관련법령	
	증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창업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업, 담배, 복권 자금 지원(액셀러레이터, 틱스 펀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및 규칙 	
구역	수출관련 지원	창업 성장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수출기업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해외시장 개척인력의 선정 및 현장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규격 인증 획득의 지원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관한 사항 					
통상협력	국제협력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기업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자매·우호도시 등 국제교류 협력업무 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조례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총괄 기업인 교류지원 사업 관련 업무 수출통상촉진단 및 국제통상협력 업무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련법령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박람회(단체·개별) 관련 업무 	
산업기술개발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학 연구소 등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방지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과제 및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산품 및 공업재료의 시험분식 지원에 관한 사항 • 계량 계측기의 교정에 관한 사항 • 시험방법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 시험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중소벤처기업부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산업디자인개발, 금형개발, 해외규격인증) 업무 • 계량기(질량계) 관련 전반적인 업무 • 중소기업기술지원단(기술지도) 업무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지방자치법 	
일반산업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성능 기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지원팀 		

구분(BRM 기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련 법령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대기능		장비의 이용 개방에 관한 사항 •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조사에 관한 사항 •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기술관련 국제 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국제 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구분(BRM 기준)	증기능						
노동정책	노동조합 단체의 육성 및 관리					•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업무 기업 지원팀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절 소결

-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별로 인천광역시 및 기초지자체의 해당 조직의 담당 기능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바는 다음과 같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 중에 공유수면점사용, 항만물류정책 기능에서 유사중복이 나타남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기능 중에서는 중소기업지원, 시장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기능 전반에 걸쳐 유사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5>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기능 비교 분석 결과 요약

특별지방행정기관	광역시자체 해당 조직	기초지자체 해당조직	기능 비교 분석 결과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해양항공국의 항만과, 해양도서정책과, 수산과	도시관리국 항만공항수산과	• 공유수면점사용, 항만물류정책 기능에서 특행과 지자체 간 유사 중복이 나타남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일자리경제국의 소상공인정책과, 창업지원과	경제복지국 경제지원과	• 기업지원, 시장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기능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제 4 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사례 분석

제1절 제주도 사례 분석

제2절 해외 사례 분석

제3절 시사점

KRILA

제 4 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사례 분석

제1절 제주도 사례 분석

1. 이관 배경

- 지자체와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유사기능 존재, 인력의 중복과 예산 및 규제 이원화로 인한 책임과 권한의 괴리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임
- 이에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시행(’04.1)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지자체가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08.2.29),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13.5.29)이 제정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의 법적 근거가 됨
- 제주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된 사안이며 제주특별법의 공포(법률 제7849호) 및 특별자치도 출범(2006.7.1)에 따라 7개 특별행정기관 사무 이관(특별법 제24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사무 이관 및 이체 인력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법 제25조), 특별행정기관 신설 금지(법 제27조) 등의 특례가 명시됨
 - 관련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새로운 특별행정기관 설치는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협의(도의회 동의) 설치 가능함(제27조)
- 이를 토대로 제주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당초계획인 8개 기관에서 (완전이관 6개 기관, 지도·감독권한 이관 2개 기관) 7개 기관의 완전이관으

로 변경되어 추진됨

<표 4-1> 제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추진경위

- '04. 1. 16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08.2.29 제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13.5.28 제정)
- '04. 11. 30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계획 건의
 - 이관대상 18개 기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외 17)
- '05. 8. 30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발표
- '05. 10. 14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 '05. 11. 21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대통령 재가
 -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확정
- '06. 02. 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 2. 21 공포 (법률 제7849호)

<표 4-2> 특별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구분

특별법 조항	이관 사무(건)	비고
제142조(국토관리사무 특례)	8개 분야 92건	- 제외사무(특별법 제141조) 중소기업청 :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해양청 : 해상 안전에 관한 사항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결정에 관한 사항 노동지청 :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
제143조(중소기업사무 특례)	4개 분야 8건	
제144조(해양수산사무 특례)	13개 분야 131건	
제145조(보훈사무 특례)	8개 분야 122건	
제146조(환경사무 특례)	4개 분야 4건	
제147조(노동사무 특례)	11개 분야 97건	
제148조(노동위원회 특례)	1개 분야 4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7a; 양영철 외(2008), p.200에서 재인용.

- 이관된 사무는 국토관리, 중소기업(시험·분석업무 제외), 해양수산(해상안전업무 제외), 보훈(보훈심사업무 제외), 환경, 노동(근로감독관업무 제외) 사무임
- 국토관리청 등 7개기관* 정원 238명 중 140명(실제 126명) 이관

-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노동사무 일부는 국제협약 및 전문성 등을 고려 우선이관 대상 제외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사무수행인력으로 전환(이체)된 정원은 140명이며, 전환정원 대비 전입현원은 125명(4급 1·6급 8·기능 1의 과원과 5급 2·7급 8·8급 13·9급 2)으로 확정됨
- 이관의 후속조치로서 2006년 이체예산을 산정하여 2007년 이후 기존 사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신설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이관대상 7개 기관의 총 예산은 2006년 기준 1,422억원 중 이관된 예산은 53%인 758억원

<표 4-3> 특별행정기관별 이관 현황

2006. 7. 1 기준

(단위: 명 / 억원)

기관명	기존정원/ 이관정원/ 실제이체인원	예산 이체액	이관사무	미이관사무 (주요사무)	이관후 조직 (제주도)
합계	238 / 140 / 126	758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49 / 49 / 44	334	국토관리사무 8개분야 92건	-	건설과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지방 중소기업청	17 / 12 / 11	4	중소기업사무 4개분야 8건	시험·분석사무 (전문성 및 통일성)	지식경제국 기업지원과의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99 / 35 / 36	400	해양수산사무 13개분야 131건	해상안전사무 (IMO국제협약)	해운항만과의
제주 보훈지청	23 / 23 / 21	4	보훈사무 8개분야 122건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사무	보훈청 (직속기관)
제주 환경출장소	8 / 2 / 2	-	환경사무 4개분야 4건	국가측정망 (대기, 토양, 지하수)	환경정책과

기 관 명	기존정원/ 이관정원/ 실제이체인원	예 산 이체액	이관사무	미이관사무 (주요사무)	이관후 조직 (제주도)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9 / 9 / 9	3	노동위원회사무 1개분야 4건	-	노동위원회 (합의제기관)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33 / 10 / 3	12	고용사무 11개분야 97건	근로감독사무 (ILO국제협약)	고용센터 (사업소)

- 사무 이관 및 이체인력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제25조) 규정으로 인
해 지특 제주계정으로 특별행정기관이관에 따른 재정을 지원 받고 있으며
지원액은 '12년까지 증가세였으나 이후 소폭 감소함
- 예산현황 : 1,385억원('07) → 1,582억원('09) → 1,868억원('12) → 1,800억
원('15)

<표 4-4> 지특 제주계정에 의한 재정 지원액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138,512	148,737	158,269	180,733	184,069	186,934	179,750	179,586	179,104	181,591	152,037
인 건 비	5,455	5,837	6,869	7,150	7,474	7,911	8,249	8,699	9,906	9,971	10,352
기본경비	741	750	711	733	717	762	835	860	879	918	918
사업비	132,316	142,150	150,689	172,850	175,878	178,261	170,666	170,027	169,685	170,702	140,76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7년 12월 기준)

2. 항만·해양·수산사무

가. 사무 이관 현황

○ 이관 사무

- 항만(국가어항 포함) 개발 등 13개 분야 131사무가 이관됨

<표 4-5> 항만·해양·수산 기능 중 이관 사무 현황

구분	내용
이관 부서 (17. 12. 기준)	해양수산물 수산정책과(수산물관리 등), 해양수산물 해운항만물류과(항만정책, 항만개발 및 관리 등)
이관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국가어항) 개발, 무역항 항만시설사용허가 등 항만법 관련사무 - 항만운송사업 등록 및 하역요금 인가 등 항만운송사업법 관련사무 권한 이양 ■ (2단계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1단계 제도개선시 누락사무 · 제주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예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업무 등 ■ (3단계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장관승인 배제 - 지방항만 지정, 항만시설 신설 또는 개축, 분구의 설정시 장관승인 배제 - 항만운송수수료 결정 기준 이양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항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이양 ■ (4단계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법 관련 8개 사무 - 항만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22개 사무
미이관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안전에 관한 사항 (항만보안, 항만관계, 해운업, 선원관리 및 해기사 면허, 선원근로감독, 선박등록, 해상교통 및 선박 안전, 항로표지 시설 및 관리) <p>→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에서 수행</p>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7년 12월 기준)

○ 미이관 사무

- 과거 제주해양수산청에서 미이관된 사무는 상부기관인 부산해양수산청 내 제주해양관리단을 통해 사무를 처리토록 함

<표 4-6> 항만·해양·수산 기능 이관 결과

기 관 명	기존정원(명)		예 산 이체액 (억원)	이관사무	미이관사무 (주요사무)	이관 후 제주도 조직 (’15년 현재)				
	이관정원	실제 이체인원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99					35	400	해양수산사무 13개분야 131건 - 항만·어항 관리 개 발, 수산관리 등 13 개 분야 131개 사무 이관 - 해양수산 본부(1국 3과) 설치로 자치 도 실정에 부합한 항만 개발·관리 등 추진 - 도 공무원이 본부 장, 이관된 국가공 무원은 전원 지방 공무원으로 전직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조례 등 6건 제정 - 해양수산자원연구 소 내 어업지도과를 신설하여 이관	해상안전사무 (IMO국제협약) - 특별법 제141조에 의해 해상안전에 관한 사항 이관 제외 - 항만보안 업무, 개 항질서 업무, 해상 운송사업, 선박등록 업무, 하역업, 급수 급유 등 부대사업, 선원관리 등 미이관
합 계	238	140	758	-	-	-				
		126								

○ 이관 사무 활용 현황

- 이관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 사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표 4-7> 참조)

<표 4-7> 항만·해양·수산 기능 이관 사무 활용 현황

조례명	제정일	관련내용
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위탁조례	2007.11.21	무역항의 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사항
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12.31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013.1.1.	항만의 관리·운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사항
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2017.9.2.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7년 12월 기준)

나. 인력

- 제주지방해양수산청(5과)에서 제직중인 항만과 수산인력(항만 24명, 수산 12명) 36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내로 이관됨

라. 이관에 따른 성과

- 해양과 수산의 통합으로 해양수산분야 통합행정서비스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함
- 이관된 사무중 항만시설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된 세외수입으로 도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항만건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제주지역 여건을 감안한 항만요금관리체계를 적용할 수 있었음. 지역 물가에 영향이 큰 항만요금에 대하여는 4년간('07~'11) 동결한 바 있으며 국제크루즈 여객터미널 이용료에 대하여는 현실화(1,500원→3,000원)함
- 둘째,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제도를 수출품 뿐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 까지 확대하여 제주 수산물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었음
- 셋째, 제주신항 개발 및 제주외항 3단계 개발에 따른 지역여건 최대한 반영할 토대가 마련됨

마. 향후 개선방안

- 자치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민원이 급증하여 기존의 항만관리·운영 및 항만건설 공정지연의 가능성이 높아짐
 - 자치사무 전환에 따른 대의회, 민원업무가 증가되어 사무수행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됨
- 제주항·서귀포항 등 국제(국내)여객 서비스 제고를 위한 항만운영 관리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력운영부담이 발생
 - 개항질서, 내항여객운송, 해양환경, 항만운송관련사업, 국유재산관리의 사무이관에 따라 제주계정으로 인건비를 추가지원토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미이관 사무에 대한 추가이양이 필요함
 - 현재 항만관리를 위한 보안검색은 국가(청원경찰), 항만관리는 도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중첩 등 상호 혼선이 발생함
 - 항만보안, 해운관련 사무, 선원관리 및 해기사 면허, 선원근로 감독, 선박등록 업무에 대한 추가이양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중소기업사무

가. 사무 이관 현황

○ 이관사무

- 중소기업(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제외) 지원 4개 분야 8건 사무가 이관

<표 4-8> 중소기업지원 기능 중 이관 사무 현황

구분	내용
이관 부서 ('17. 12. 기준)	경제통상일자리국 기업통상지원과 (기업정책, 통상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등 4개 담당)
이관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업종 교류 지원사업(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 고시 -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계획 수립, 시행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추진 -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수립시 공공기관장에게 개선권고 - 지방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지원 ■ (2단계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거점 지원(국내 유통망 구축 등) - 공공기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제도 개선권고 - 공공기관 장애인기업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제도 개선권고 - 위탁기업이 위·수탁 거래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요구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위·수탁거래 관행 조사 ■ (3단계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거래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 ■ (4단계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경영 능력 향상위한 연수지도 ■ (5단계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요구
미이관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무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내 제주시험연구센터(제주위치)

○ 미이관 사무

- 미이관된 시험분석기능은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산하 제주시험연구센터를 제주지역에 설립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어 여전히 이원적인 사무처리 구조가 존재함

<표 4-9> 중소기업지원 기능 이관 결과

기 관 명	기존정원(명)		예산 이체액 (억원)	이관사무	미이관사무 (주요사무)	이관 후 제주도 조직 ('15년 현재)
	이관정원	실제 이체인원				
	제주지방 중소 기업청	17				
12						
11						
합 계	238	758	-	-	-	
	140					
	126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07a; 양영철 외(2008), pp.182~183; 주재복·강영주(2016), pp.19-21에
서 부분 재인용.

○ 이관 사무 활용 현황

- 이관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 사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표 4-10> 참조)

<표 4-10> 중소기업지원 기능 이관 사무 활용 현황

조 례 명	제정일	관 련 내 용
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2007.1.3	중소기업 종합적인 지원 기관운영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2007.5.9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위한 기금조성
도 벤처기업직접시설 등의 지정조례	2008.7.16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위임사항 규정
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2009.1.7	여성기업 및 창업, 경제활동 지원
도 소상공인 지원등에 관한 조례	2010.4.21	소상공인 건전한 육성발전 지원
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1.5.11	장애인기업 및 창업, 경제활동지원
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011.5.11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2011.5.11	수출증진위한 행정·재정지원
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4.4.21	농공단지 효율적관리 및 활성화 지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2017.7.20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보증지원
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7.11.1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임사항 규정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7년 12월 기준)

나. 인력

- 이관된 인력은 14명(일반직 12, 무기계약직 2)으로 구체적으로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6급 3명, 9급 1명, 기능직 4명임

- 전문관 지정(통상정책)을 통해 정책전문성을 제고함(1명 지방행정 6급)

라. 이관에 따른 성과

-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일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
 - 제주지역의 특성(지리적, 기업상황, 경제상황 등)에 걸맞은 정책수립
- 지역기업의 건의사항 및 기업발전관련 시책 등 도정 정책반영 용이
- 중복사무의 조정을 통한 일관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 기존 중소기업청과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등 주민편의 상승
- 제주형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 기업인들의 의견반영과 제주의 특화분야를 고려한 사업개발 및 지원
 - 제주향토강소기업, 물산업·바이오산업육성, 전시판매장 운영 등

마. 개선방안

- 인건비 및 기본경비만 제주계정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부족과 국가수준의 새로운 사업추진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 예를들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중소기업 진단·지도 및 컨설팅사업, 정보화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공고 또는 홍보업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계획에서 배제되고 있음
 - 이를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제주전담부서를 신설토록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정보 및 인력부족으로 국가차원의 정책대응은 역부족임
 - 따라서 중소기업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정보교류 등 업무협력을 위한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가 뒷받침 되어야 함
- 현재 국비지원은 사무이관에 따른 인건비·기본경비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외 이관사업(창업지원, 판로지원, 여성·장애인기업 지원 등) 관련한 별도의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함

- 사업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마련이 요구
- 미이관사업의 이원화로 인해 도내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짐
 - 제주와 광주에 위치한 두 기관을 모두 방문해서 민원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비능률이 발생함
 -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특별행정기
관 이전 후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주 내 사업체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므로 미이관사무로 인한 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제2절 해외 사례 분석

1. 해양수산청 관련 해외 사례¹³⁾

가. 항만개발·운영

- 항만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운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간섭 및 지도를 최소화하는 세계적 흐름임
 - 일반적으로 정부는 인프라의 구축이나 기본계획의 수립과 같이 민간의
참여유인이 낮은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제한적으로 개입함
- 주요 선진국의 항만운영은 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항
만공사 혹은 다국적 터미널 운영회사 등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였음
 - 항만관리 및 운영을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나라는 드물며, 주요 선진국 중

13) 해양수산청청 관련 해외 사례는 김영평 외(2002), pp. 32-76의 내용과 김재훈 외(2008), pp. 45-47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프랑스, 대만 등과 같이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국가가 해당됨

※ PA(Port Authority) : 항만공사

※ PSAC : 싱가포르 항만공사(Port of Singapore Authority Corporation)

- 최근 항만의 기능은 전통적 하역 기능과 화물중계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종합물류·지역 경제권 활동거점(허브항만) 기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항만관리 참여유형은 자치단체의 직접참여 방식이 지배적, 특히 자치단체의 직접참여는 지역경제와 항만 인프라를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직접참여 방식을 취하면서 특별회계 및 산하별도기구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항만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표 4-11> 각국 항만시설 개발 주체

국가	계획수립주체	항만시설 개발			관리운영
		항로준설	기반시설	상부운영시설	
일본	지자체	중앙정부	중앙/지자체	지자체/민자	지자체
미국	지방정부	연방정부	지방정부/PA	지방정부/PA	지방정부/PA
독일	지방정부	연방정부	지자체	민자	지자체
네덜란드	중앙/지방	중앙정부	로테르담시	민간	지자체/PA
영국	민간	정부(예산지원)	민간	민간	민간
싱가포르	중앙정부	민간(PSAC)	민간(PSAC)	민간(PSAC)	민간(PSAC)
홍콩	정부(기초계획)	정부(예산지원)	민자	민자	민자
대만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민자	중앙정부
프랑스	PA/중앙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PA/민간	중앙정부/PA
한국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PA/민자	중앙(PA)

자료: 김재훈 · 남궁근 · 정광호 · 김기환(2008: 45)

나. 해운·입출항·교통시설·관계분야

-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는 해운 행정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음
- 이는 해운 행정이 국제협약과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고,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어 정부의 통일적인 관리가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임

<표 4-12> 각국의 자치단체 항만관리 참여유형

참여 방식	자치단체 항만관리			운영사례
	운영·참여 방식		조직 형태	
직접참여	자치단체 조직	일반회계	항만국	도쿄항, 엔트워크항, 함부르크항, 오클랜드항
		특별회계	항만관리본부	로테르담항, LA항
	산하별도기구		항만자치공사 (조합)	뉴욕·뉴저지항 (나오야항, 요카이치항)
간접참여	심의기구에 대표파견		없음	마르세이유항
	항만관리주체와 인사교류			
	항만계획수립·중요의사결정 참여			제노아항

자료: 김재훈·남궁근·정광호·김기환(2008: 46)

<표 4-13> 각국의 항만관리 운영 주체

구 분	운 영 주 체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안보부 연안경비대(USCG) - 태평양 4개소, 대서양 5개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및 11개 지방관구 해상보안본부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부 해사연안경비청(MCA)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국 항로표지관련 지방조직(4개 청)

자료: 김재훈·남궁근·정광호·김기환(2008: 47)

2. 중소기업청 관련 해외 사례¹⁴⁾

가. 중소기업 지원체계

-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전담조직을 통해 창업, 기술개발과 같은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경제산업정책 총괄부처의 외청으로 중소기업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 미국·일본·영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을 강화하였음
- 최근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부문과 민간부분이 협력, 종합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교육기관, 민간기구 협력하여 광역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
- 영국은 중소기업 관련 행정이 다양한 부처에서 제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중복과 혼란을 줄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즉각 제공될 수 있는 조직체제로 개편하는 중임
 - 친시장·친기업적 방향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도모함: 주로 정부의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지원방식이 활용되며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완화와 같은 규제 개혁의 추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기술기업 지원, 품질개선·해외시장 개척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 중소기업 정책은 ①마이크로정책(금리·과세·공공지원 관련 정책), ②규제완화·간소화정책, ③Sector별(하이테크 기업·농촌기업·소수민족기업 등) 정책 및 ④간접지원정책(정보·조언·컨설팅 등)으로 분류됨(이환범 외, 2012)¹⁵⁾

14) 중소기업청 관련 해외 사례는 이환범 외(2012), pp. 122-160의 내용과 김재훈 외(2008), pp. 48-49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15) 영국의 중소기업 수는 447만개로 전체 기업체 수의 99.9%에 해당됨. 영국의 중소기업 가운데 99%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이와 같은 영세업체가 민간부문 총고용의 46%를 창출, 전체 민간부문 매출의 38%를 차지함(이환범 외, 2012)

-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독립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시행하는 체계를 가짐
 - 연방정부는 국가적 수준, 주정부는 지역 수준의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함
- 독일 연방정부의 경우 중소기업에 유리한 경쟁환경의 조성, 창업 활성화가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큰 틀임
 - 이를 위해 시장 환경의 개선(세제 개편,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규제완화 및 환경정책), 창업 활성화(창업지원 및 자립기반을 조성), 기술지원과 같은 생산력 강화 등의 중소기업정책이 시행됨
 - 독일의 연방정부 산하의 중소기업 담당조직은 연방경제기술부(BMWi) 중소기업정책실이며, 그 기본적인 기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틀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조달하며,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것임
 - 연방정부의 역할은 거시적, 국가적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고 장기자본을 제공하는 것이며, 주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중소기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되어 있음

<표 4-14>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

국가명	중앙조직	조직형태	지방조직
미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법, 1953)	독립행정기관 (대통령직속)	10개 광역지방중기청, 68개 지방사무소, 15개 출장소
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설립법, 1948)	경제산업성 소속기관(외청)	경제산업성 소속 경제산업국(산업부, 중소기업과)
영국	기업실 (Enterprise Directorate) (정부조직개편, 2007.6)	기업규제개혁부 (DBERR) 소속기관	기업규제개혁부 산하 9개 지역개발청(RDA), 45개 Business Link
한국	중소벤처기업청 (정부조직개편, 1996.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중앙행정기관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자료: 김재훈 · 남궁근 · 정광호 · 김기환(2008), p.49에서 수정 인용

나. 협력체계

1) 영국

- 영국은 중소기업지원 서비스 체계 개선에서 중복기능을 간소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중앙 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구분을 명료화 하고 있음
 - 먼저 중앙정부는 집행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거시적인 제도의 입안과 조정 및 중소기업을 위한 여건마련에 집중하며, 지역 원스탑센터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됨
 - 사업·기업·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 산하 기관으로 Enterprise Directorate를 두어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정부부처들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이슈에 대하여 전문정책담당관의 기능을 수행한 바 있음
 -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로 통합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BIS 내의 기업지원국(Enterprise Directorate)이 중소기업 정책의 주관부처가 됨

2) 독일

- 독일은 연방제 하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구분된 중소기업지원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담당은 연방경제기술부(BMWi) 중소기업정책실이며, 주정부의 담당기관은 주의 경제성임
 - 연방정부는 주로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중소기업에 장기자본을 용자하는데 치중하는 반면에 주정부는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며, 중소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권한을 가짐
 - 주정부에서는 현행 중소기업 정책과 담당 기관이 다양하고 체계가 복잡하

므로 중소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 작업을 추진 중임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노동성 산하 균제은행(DtA)과 재무성 산하 재건은행(KfW)을 통합하여 2003년 중소기업은행을 발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였음
- 독일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수직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이며 둘 사이의 지원정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통폐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므로 중복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
 - 그럼에도 지원정책의 중복이 일어날 경우 중소기업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지원받도록 되어 있음
 -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규정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연계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 정부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협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책들의 시너지효과를 배가하려는 목적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책 조율 작업을 실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이 높음

제3절 시사점

- 제주도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을 뿐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과 재협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분야의 경우 이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외에 중앙부처에서 사업관련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 예산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즉 재원 배분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 배분만 이루어진 상황임
- 항만계획 분야는 외국에서도 중앙정부가 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항만관리(또는 개발)는 민간 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항만 관리를 이관받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 관리 운영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음
 - 오히려 항만 관리 분야에서 보안 측면에서 여전히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 다른 보안 및 안전 관리 업무와 업무 중첩 등 혼선이 있으므로 이 사무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중소기업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독일, 영국 등 외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엄격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 지방 간 사무 배분에 관한 논의를 주최하는 기구가 있음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끊임없이 사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있는 독일 사례를 본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집행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제 5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분석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지방이양 대상 선정

제3절 소결

KRILA

제 5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분석

제1절 분석모형

1. 분석 대상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이관 검토 대상이 됨

<표 5-1> 인천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검토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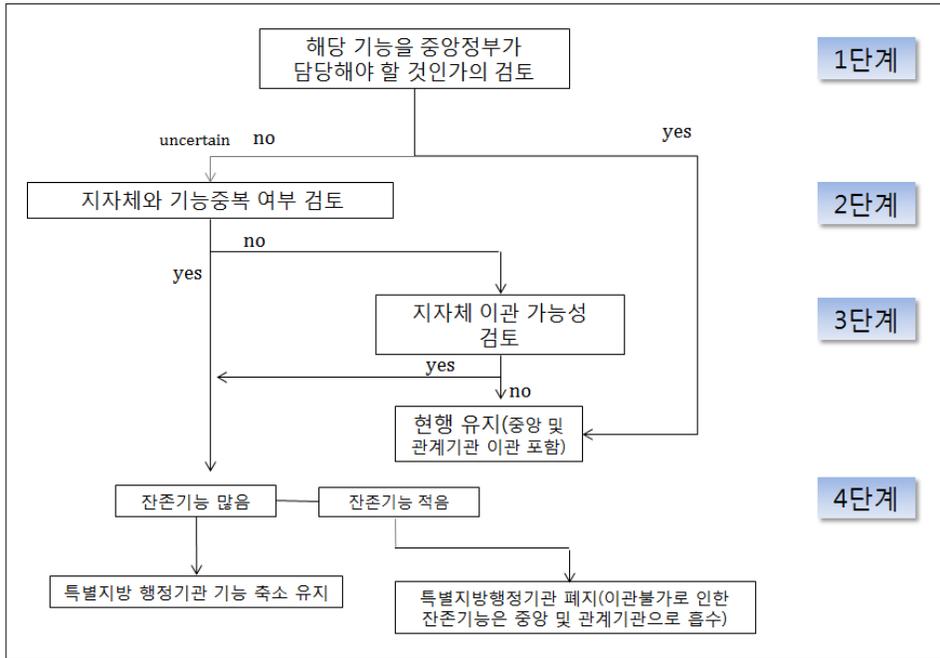
기관명	주요 기능	소재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기반시설 확충	인천 중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발전	인천 남동구

2. 분석 방법

- 인천광역시 소재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본 장에서는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는 과정이므로 1단계 판단을 제외한 총 4단계의 판단을 실시하며, 제1단계(중앙정부 공급 적정성 판단)와 제2단계(기능중복성 판단)에 대한 분석을 진행 후, 3단계와 4단계는 소결에서 이관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적용함
 - 1단계는 해당 기능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필요성 검토
 - 2단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중복 여부 검토
 - 3단계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가능성 검토

- 4단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잔존 업무 수준 검토

<그림 5-1> 본 연구에서 특행기관 지방이양 판단 절차



3. 판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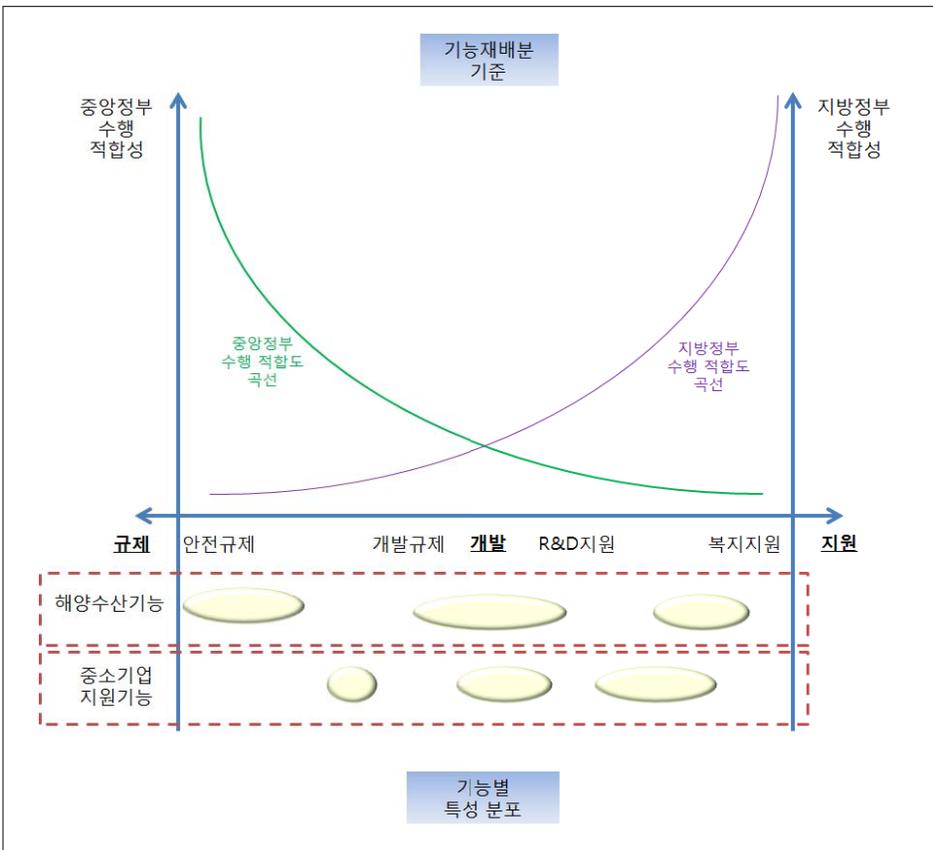
○ 판단절차 각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5-2> 특행 사무 이양 판단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단계	판단 기준	판단 근거
1단계	중앙정부 수행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배분 논리 모형에 근거 ✓ 지원 업무인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 정부 수행 적합성이 더 높다고 판단 ✓ 규제 업무인 경우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 정부의 수행 적합성이 더 높다고 판단 ✓ 개발 업무의 경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
2단계	지자체와의 기능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행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성이 높은지 여부 ✓ 완전히 동일한 사무가 아니더라도 업무 대상이 동일하게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는 기능중복성이 있다고 판단
3단계	지자체 이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아직 수행하지 않는 업무일지라도 집행적 성격이 커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 경험 상 수행 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 이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 지자체가 수행하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거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어 재량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지자체 이관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
4단계	특행기관 잔존 업무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행기관의 조직 재설계의 근거 ✓ 중기능 수준의 업무량이 최서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잔존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하여 기구 축소의 형태로 존치 ✓ 중기능 수준의 업무량이 존재하지 않고 단위 사무 수준의 업무량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잔존 업무량이 적다고 판단하여 기구 폐지·타기관 흡수

- 위의 판단 절차에서 1단계에서는 앞서 도출한 기능 배분 논리 모형에 따라 분야별 기능 및 사무의 특성 별로 중앙정부 수행 적합성 및 지방정부 수행 적합성을 판단하게 됨
 - 해양수산분야의 기능 및 사무의 분포를 살펴보면, 개발적 성격이 주된 성격이며 규제적 성격과 지원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
 - 중소기업지원분야의 기능 및 사무는 지원적 성격이 주된 성격이며 개발적 성격과 규제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

<그림 5-2> 기능 배분 논리 모형의 기능별 판단 기준



제2절 지방이양 대상 선정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가. 1단계 판단: 중앙정부 공급 적절성 판단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는 기능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공급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1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상 1단계 판단 결과

구분(BRM 기준)		1단계 중앙정부 공급 적절성 판단			판단근거
대기능	중기능	규제적 성격 여부	개발적 성격 여부	지원적 성격 여부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공유수면 접사용		○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업무는 유형의 자원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개발적 성격의 업무에 해당
	근해어업관리 육성			○	✓ 지자체 보조금 업무, 항만공사 관련 어업보상 업무 등은 지원 적 성격에 해당
	어장이용 및 어항관리		○		✓ 어항공사의 설계 및 집행감독,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등의 업 무는 개발적 성격에 해당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	항만물류 정책	○	○		✓ 신항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관련 업무 등은 개발업무 에 해당 ✓ 무역항 단속 및 질서유지 업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 사무는 규제적 성격에 해당하나 개발을 위한 규제의 측면이 있음
	해운항만 정책 및 지원	○			✓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규제적 성격에 해당

구분(BRM 기준)		1단계 중앙정부 공급 적절성 판단			판단근거
대기능	중기능	규제적 성격 여부	개발적 성격 여부	지원적 성격 여부	
해운항만 관련 하천정비 관리	연안관리 정비사업 및 점검		○		✓ 연안정비사업은 개발적 성격에 해당
	연안관리정책	○	○		✓ 연안관리정책 기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어 개발적 성격에 해당 ✓ 갑문시설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사무도 규제적 특징이 있으나 개발을 위한 규제의 특면이 있음

나. 2단계 판단: 기능중복성 판단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는 기능을 대상으로 각 기능별로 기능중복성 여부를 판단한 2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상 2단계 판단 결과

구분(BRM 기준)		기능	2단계: 기능중복성 여부 판단	비고
대기능	중기능			
수산 자원 관리 및 조성	공유수면 점사용	•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료	○	
		•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관련 업무	○	
	근해어업 관리육성	• 항만공사 관련 어업보상 업무	×	
		• 지자체 보조금 관련 업무	×	
	어장이용 및 어항관리	• 어항공사의 설계·집행·시공 감독 및 준공 확인	×	
		• 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	
•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		

구분(BRM 기준)		기능	2단계: 기능중복성 여부 판단	비고
대기능	중기능			
		•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	
항만 운영 및 해상 운송 정책	항만물류 정책	• 항만운영계획의 수립	○	
		•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	×	
		• 항만운영단체의 지도	○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 록 및 지도	○	
		• 항만시설·장비 등의 관리·운영	×	
		• 도선사의 지도	×	
		• 항만보안	×	
		• 정보화추진 관련업무	×	
		• PORT-MIS/EDI운영관리	×	
		• 경인·영동권역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	
		• 정보통신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	×	
		• 인천북항 개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인천북항 개발에 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시공감독	○	
		• 인천북항 시설공사의 공정, 안전관리	×	
		• 인천북항 항만공사용 기계 및 장비의 운 용과 유지, 수선	×	
		• 인천신항개발(정부재정) 시행계획의 수 립 및 조정	×	
		• 인천신항개발(정부재정)에 대한 조사, 측 량, 설계 및 시공감독	×	
		• 인천신항 시설공사의 공정, 안전관리	×	
		• 인천신항 항만공사용 기계 및 장비의 운 용과 유지, 수선	×	
		• 비관리청항만공사	×	
• 항만기본계획 관련 협의 및 용역 관리	○			

구분(BRM 기준)		기능	2단계: 기능중복성 여부 판단	비고
대기능	중기능			
		• 항만시설공사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	
		•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량 및 설계	×	
		• 항만시설공사의 공정·시공감독·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	
		• 항만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사용 및 장애물의 이전과 그에 따른 보상 업무	×	
		• 항만배후 수송시설의 계획수립·시공감독 및 안전관리	×	
		• 항만시설장비의 설치·신고·검사	×	
		• 항만방재 업무	○	
		• 항만재개발 관련 국가재정의 집행 및 사업관리	×	
		• 마리나항만사업의 실시계획승인·사업집행 및 사업관리	×	
	해운항만 정책 및 지원	•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	
		• 항로표지용품의 공급	×	
		• 항로표지의 관리 및 특수항로표지의 설치	×	
		• 항로표지의 설치, 폐지 및 위치변경등의 고시	×	
		•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설계 및 시공감독	×	
		• 항로표지용 선박의 관리·운영	×	
		• 사설특수항로표지의 설치·폐지, 변경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	
		•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관리의 위탁승인 및 감독	×	
		• 인천항 조류신호시스템 관리 및 운영	×	
		• 인천부두운영(운항회의 포함) 관리	×	
• 항만운송사업체 지도 및 감독	×			

구분(BRM 기준)		기능	2단계: 기능중복성 여부 판단	비고
대기능	중기능			
		• 개항질서법 운영 및 개항단속	×	
		• 관공선 관리 운영 및 지도	×	
		• 선박통항안전 및 선박 점검	×	
		• 입출항 신고수리 및 항만시설 사용허가	×	
		• 인천신항 항만공사용 기계 및 장비의 운용과 유지, 수선	×	
해운 항만 관련 하천 정비 관리	연안관리 정비사업 및 점검	• 무역항단속 및 질서유지	×	
		• 해역이용협의 및 특별관리해역의 관리	×	
		• 방치폐선 및 항내 침몰선 제거	×	
		• 관공선 관리 운영	×	
		• 해양감시대관리운영	×	
		• 항계내 선박수리허가 및 행사허가	×	
	연안관리 정책	• 감문시설의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	
		• 국가연안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시행	○	

다. 소결

- 이상의 판단 기준을 토대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정비 방안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각 기능별로 일부 또는 전부 이관의 정비 방안이 다르며 각각에 대한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 5-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상 정비 방안

구분(BRM 기준)		정비 방안			판단 근거
대기능	중기능	유지	이관		
			일부	전부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공유수면 접사용			○	✓ 공유수면접사용 기능은 개발적 성격을 가지나 기능중복성이 나타나므로 이관이 타당
	근해어업관리 육성			○	✓ 근해어업관리육성 기능은 지원적 성격을 가지나 중앙과 지방 간에 사무상의 기능중복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보상 업무나 보조금 지원 업무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로 이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
	어장이용 및 어항관리		○		✓ 어장이용 및 어항관리 기능은 개발적 성격을 가지나 기능중복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어항 개발 계획을 제외한 유지 및 관리 사무의 경우 집행적 성격의 업무로 이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	항만물류 정책		○		✓ 항만물류정책 기능은 주로 개발적 성격과 규제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기능중복성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항만개발계획을 제외한 개발 사업 집행 업무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여 지자체의 이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
	해운항만		○		✓ 항만물류정책은 항로표지 관련 업무

구분(BRM 기준)		정비 방안			판단 근거
대기능	중기능	유지	이관		
			일부	전부	
	정책 및 지원				<p>의 규제적 성격과 항만시설 관리의 개발적 성격이 동시에 나타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사무가 지자체와 기능중복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 ✓ 항로표지 관련 사무는 전국적인 통일성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항만시설 관리 사무의 경우에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여 지자체의 이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
해운항만 관련 하천정비 관리	연안관리 정비사업 및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정비사업 및 점검 기능은 개발적 성격이 강하고, 지자체와 중복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집행적 성격이 강하여 지자체 이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
	연안관리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정책은 개발적 성격이 강하나 지자체에서도 이미 관련 업무를 실시하고 있어 기능중복성이 나타나고 있고, 집행적 성격이 강하여 지자체 이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

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가. 1단계 판단: 중앙정부 공급 적절성 판단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행하는 기능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공급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1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6>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상 1단계 판단 결과

구분(BRM 기준)		1단계 중앙정부 공급 적절성 판단			판단근거
대기능	중기능	규제적 성격 여부	개발적 성격 여부	지원적 성격 여부	
기업지원	중소기업지원			○	✓ 중소기업 지원 업무는 창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보제공, 보조금·인프라 지원 제공 등을 하게 되므로 지원적 성격에 해당함
지역경제	시장지원			○	✓ 시장지원 업무는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 업무로 지원적 성격에 해당함
산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산업 및 중소기업금융 관련 지원			○	✓ 산업 및 중소기업 금융관련 지원 업무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금융 자원을 제공하는 업무로 지원적 성격에 해당함
무역	수출관련 지원			○	✓ 수출관련 지원 업무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 지원적 성격에 해당함
산업기술 개발육성	일반산업 기술지원		○	○	✓ 일반산업 기술 지원 업무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로 개발적 성격과 지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나. 2단계 판단: 기능중복성 판단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행하는 기능을 대상으로 각 기능별로 기능중복성 여부를 판단한 2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상 2단계 판단 결과

구분(BRM 기준)		기능	2단계: 기능중복성 여부 판단	비고
대기능	중기능			
기업 지원	중소 기업 지원	• 지역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집행계획 수립	○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사무 조정·협력	○	
		•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관련 각종 간담회의 개최 및 운영	○	
		•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	
		• 지역 청소년 등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고양에 관한 사항	○	
		•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 실험실창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및 신기술창업 인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지역 청소년·대학생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등 교육에 관한 사항	○	
		• 창업 동아리 및 창업 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	○	
		• 지역 창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지역 창업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	

구분(BRM 기준)		기능	2단계: 기능중복성 여부 판단	비고
대기능	중기능			
		사항		
		•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신기술 창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	
		• 창업자의 법인 설립 및 공장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도 및 감독	×	
		• 지역 창업자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의 부담금·보조금 및 세제 지원과 그 안내에 관한 사항	×	
		• 창업보육센터 우수 졸업·졸업예정 기업의 산업기술단지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창업보육센터,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	×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	
		•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관한 사항	×	
		• 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	
		• 공공기관 구매지원담당자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공공구매 촉진대회 및 구매상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지역 장애인기업·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기업과 공업고등학교 간 연계 인력양성사업의	×	

구분(BRM 기준)		기능	2단계: 기능중복성 여부 판단	비고
대기능	중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실태조사 및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 지역 산업체·인력공급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	
		•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지역 중소기업 간 채용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	×	
지역경제	시장지원	•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산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산업 및 중소기업 금융관련 지원	•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	×	
		•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무역	수출관련 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	
		• 수출기업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해외시장 개척인력의 선정 및 현장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 해외규격 인증 획득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기술 개발육성	일반산업 기술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대학·연구소 등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구분(BRM 기준)		기능	2단계: 기능중복성 여부 판단	비고
대기능	중기능			
		•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방지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 지방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과제 및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공산품 및 공업재료의 시험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	
		• 계량·계측기의 교정에 관한 사항	○	
		• 시험방법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	
		•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	
		• 시험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지방중소벤처기업부 보유 장비의 이용 개방에 관한 사항	×	
		•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조사에 관한 사항	×	
		•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의 기술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소결

- 이상의 판단 기준을 토대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대한 정비 방안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각 기능별로 일부 또는 전부 이관의 정비 방안이 다르며 각각에 대한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 5-8>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상 정비 방안

구분(BRM 기준)		정비 방안			판단 근거
대기능	중기능	유지	이관		
			일부	전부	
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 업무는 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무에서 기능중복성이 나타나므로 전부 이관이 타당
지역 경제	시장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원 업무는 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기능중복성을 나타내므로 전부 이관이 타당
산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산업 및 중소기업 금융관련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및 중소기업 금융관련 지원 업무는 지원적 성격을 가지나 기능중복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음 ✓ 지역 금융기관과의 연계 업무로서 지자체가 오히려 지역 정보 활용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부 이관이 타당
무역	수출관련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관련 지원 업무는 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기능중복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수출지원센터 운영 업무는 집행적 성격을 지니고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업무 역시 지자체가 수행이 어려울 만큼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부 이관이 타당
산업기술 개발육성	일반산업 기술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산업 기술지원 기능은 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기능중복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 제품의 시험 분석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이관이 타당하지 않음 ✓ 그 밖의 기술 지원과 산학협력 지원 등의 업무는 집행적 성격을 지녀 지자체의 수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관이 타당함

제3절 소결

-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별 정비 방안 결과를 요약한 바는 다음과 같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어장이용 및 어항관리, 항만물류정책, 해운항만 정책 및 지원 기능의 경우 일부 이관, 나머지 기능은 전부 이관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일반산업기술지원 기능의 경우 일부 이관, 나머지 기능은 전부 이관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5-9>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별 정비 방안 요약

특별지방행정 기관	구분(BRM 기준)		정비 방안		
	대기능	중기능	유지	이관	
				일부	전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공유수면 접사용			○
		근해어업관리 육성			○
		어장이용 및 어항관리		○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	항만물류 정책		○	
		해운항만 정책 및 지원		○	
	해운항만 관련 하천정비 관리	연안관리 정비사업 및 점검			○
연안관리정책				○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기업지원	중소기업지원			○
	지역경제	시장지원			○
	산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산업 및 중소기업금융 관련 지원			○
	무역	수출관련 지원			○
	산업기술개발육성	일반산업기술지원		○	



제 6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추진 전략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실행 전략 제안

KRILA

제 6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추진 전략

제1절 기본 방향

1.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국가 행정의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제고인 만큼 분권과 특행 이양이라는 개혁도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
 - 그간의 분권 논의는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의 배분의 기준 및 절차, 실패 또는 성공 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제도 개혁, 특히 국가 행정 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 삶의 질 제고 측면의 논의가 핵심이 되어야 함
 - 누가(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기능 재배분)의 논의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의 논의 즉,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의 논의가 전제되어야 함

2. Bottom-Up 식 분권 논의 활성화

- 분권 논의에서 주민 삶의 질 제고가 최우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간의 Top-Down 식 분권 논의를 지양하고 Bottom-Up식 분권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함
 - 권한을 나누는 과정에서 조직의 존폐를 우려하는 상위 단체에서는 오히려 ‘교묘한’(형식적으로 분권이거나 실제적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하위 단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분권 방해자가 될 수 있음
 - 사무만 이양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경우가 대

표적인 행태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은 하락할 수 있음

3.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달성 지향

- 국가 행정 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분권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파레토 최적 지점’을 찾아야 함
 - 파레토 최적은 다른 어느 누구의 상태도 불리하게 하는 일 없이 한 개인의 상태를 유리하게 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가치판단을 기초에 두고 있음¹⁶⁾
 - 소속 지방청의 기능을 이관하는 재정비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가 소극적이고 저항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러한 개혁이 부처 존폐와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오재일 외, 2008; 한표환, 2014)
 - 중앙정부의 반대와 지자체의 지지라는 구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양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파레토 최적(또는 파레토 효율)을 이루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파레토 최적 지점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를 우선시해야 함

4.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이양

- 제도 개혁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이 수반되므로 적용 시차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특행 기관 이양에 따른 기능재배분과 이에 부합하는 인력 재배치 등의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함

16) 두산 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4300&cid=40942&categoryId=31819>

-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사무 이양의 실질적 집행을 위하여 조례 마련, 조직 및 인력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주도와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특행 기관의 이양은 단번에 완결될 수 있는 개혁이 아니며 이양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문제들을 조율할 수 있는 양자 간의 조정기제 마련이 필요
- 특행기관의 재정비는 인력 및 예산의 이양을 동반하는 실질적인 이양이어야 함
 - 권한의 이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의 이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적 과정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예산 배분에서 사무 이양이 실효성을 갖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음
 -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결정자 특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행 이양 결과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음(한표환, 2014)
- 특히, 권한 이양으로 인해 국비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복지 사무 중 미활용 권한이 발생하는 이유가 도 조례 제정을 통한 이양권한 활용시 국비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¹⁷⁾
 - 예를 들어,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위탁권 이양 사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함
 - 또한 관련 시설의 제주시 편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제주도 실정과 권한 활용 가능 상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활용 권한이 발생하게 됨
 - 예를 들어,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역별 지도의사 관련 사무 이양의 경우가 이에 해당함

17)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강화 계획. 2018.6.」

제2절 실행 전략 제안

1. 선행 조건: 법적 명확성 확보

- 특행 이양을 통한 기능 재배분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함
 - 행정은 법적 근거 하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할 때, 법적 모호성이 있는 경우에 불합리한 기능 배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됨
 - 특행 이양 개혁을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한 만큼 특히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명한 역할 분담과 무분별한 조직 확장을 막기 위해서도 현행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전략

가. 조정기제 마련

- 단계적인 이행과정에서 조정기제가 마련되어야 함
 -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중소기업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책들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려는 목적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책 조율 작업을 실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 나라에서도 양자 간의 사무 배분 관련 조율 작업을 위한 기제가 필요함
 - 기존의 기구들 -예를 들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또는 시도지사협의회 등 -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권한 이양의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중앙 지방 양자 간의 조율을 위한 상시적인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지자체 역량 강화

1) 전문성 강화

- 특행기관을 이양 받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
 - 권한 이양 받는 자치구 공무원의 역량도 분권 개혁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는 특행 기관 사무 이양 시, 담당공무원도 함께 이관함이 원칙이므로 이관으로 인해 전문성의 급격한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오재일 외, 2008)
 - 그러나 제주도 사례에서 보듯이 특행기관의 모든 공무원이 지자체로 이관되지는 않으며 지자체의 인력 운영 방식은 순환보직이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단계별로 지자체가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부터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2) 이양 사무 수행을 위한 조직 재설계

- 새로운 기능을 담당할 조직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특행 이양은 전국 지자체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각 지자체마다 수행 역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함
 - 이양 받게 되는 기능이 현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중복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비한 조직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특성상 하나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조직 설계에 다른 조직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임

3) 공무원의 리더십 배양

- 정책 결정 권한의 이양에 따라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위한 공무원 리더십 배양 노력도 필요함
 - 공무원들에게는 더 많은 권한은 더 많은 책임으로 인식되므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보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

4) 조직문화 개선

- 공무원 개인의 리더십 배양과 더불어 실패에만 지나치게 민감한 조직 문화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집행자의 역할에서 혁신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조직 문화로의 전환도 고민해야 할 시점임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 금창호·박용성·최승범. (201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보고서.
- 금창호·민 기·최영출·홍준현. (201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강화 연구 용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성배. (2006). 공공서비스 전달의 적정 거버넌스 모형 모색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조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27-48.
- 김영수·금창호. (200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정방안. 「지방정부연구」. 6(4): 231-249.
- 김익식. (1994).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재조정. 「한국행정연구」. 3(3): 94-112.
- 김재훈·남궁근·정광호·김기환.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추진전략 연구. 한국행정학회.
- 김종성. (2000). 특수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재배분-경기도 환경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38(2): 273-300.
- 박재희. (1999).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효과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소진광·이승중·이기우·윤두섭. (2002).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재정립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용역보고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주요 선진국 국가관리지방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보고서.
- 안영훈. (2012). 이명박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실적 평가.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양영철. (2009). 기획논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의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23(2): 59-100.
- 양영철·민 기·남진열·황경수·오승은·허향진·하승수·김효명. (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영문화사.

- 오재일·한장희.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에 관한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1-33.
- 우윤식. (201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타당성 검토 : 국도와 국가하천 사례. 「국도연구」. 76: 149-169.
- 이시철. (200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관 논의의 쟁점과 방향. 「지방정부연구」. 11(2): 25-46.
- 이은재. (1997).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정립 방안. 「지방행정연구」. 12(3): 1-19.
- 이환범·권용수·최진식. (2011).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를 위한 전략적 대응: 지방자치단체 이관 분야별 기능비교 분석을 토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3): 127-156.
- 이환범·윤광재·김대근·김병문·이행준·이지영. (2012). 「지방중소기업청 수행기능의 효율성 제고 방안」.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 이현우·이미애.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대응방안. 기구·인력·재정 조정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분권형 선진국가를 위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고서.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6).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고서.
- 정용덕. (2001). 한일 중앙-지방정부간 국가기능 배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공선택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0(2): 1-23
- 정원식·안권욱. (2009). 독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을 통한 기능적 행정체제개편의 성과와 영향: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9(3): 25-52.
- 제주특별자치도. (2007a).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 제주특별자치도
 _____ . (2007b). 「제주통계연보」. 제주특별자치도
 _____ . (2007c). 「특별자치도 출범, 그간의 성과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2).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방안」.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보고서.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 「국가사무 수행체계 및 지방이양 대상사무 연구: 고용, 복지, 산업 분야 위탁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한국유럽학회(편). (2011). 「유럽의 사회통합과 사회정책」. 유럽학연구총서
- 한표환. (2014). 역대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 비교평가. 「지방행정연구」. 28(4): 73-97.
- 행정안전부.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검토 보고」. 행정안전부.
- Theodore J. Lowi, (1964).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Vol.16: 677-715.

【부록】

1. 해양수산행정 조직의 역사

- 각 정권별로 해양수산부 본부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영삼 정부는 당시 수산청, 해운항만청 및 과학기술처,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13개 부·처·청에서 분산 수행해오던 해양수산행정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함(1996년)
 -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작고 경쟁력있는 정부를 표방, 4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조직규모가 점차 축소되었음
 - 노무현 정부 시기는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안정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해양수산 행정에서 핵심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음(황창호, 2017). 정책기능과 어업지도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를 신설하였음. 2005년 참여정부의 정책홍보관리를 강화하려는 기조에 따라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 성과관리팀 등 7개 팀이 신설됨. 2006년에는 한미FTA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무역대책팀을 신설함.
 - 이명박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폐지(2008년)하고 관련 기능을 국토해양부(해양정책,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 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 등)와 농림수산물식품부(수산정책 및 어촌 개발, 수산물 유통 등)로 분산 이관함
 - 박근혜 정부 시기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수산행정 전담부서인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킴(대통령령 제24456호).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물식품부의 관련기관들이 재편입했으며 해양정책실 산하에 3개 정책관(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과 2개 과(해양영토과, 해양레저과)가 새롭게 신설되었음

<그림 A-1> 역대 정부별 해양수산행정조직 변천도



자료: 황창호(2017)

- 각 정권별로 해양수산부 지방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영삼 정부 시기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함
 -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출범(2002년)하였으며, 지방청의 해양환경과와 항무과 간 업무조정이 이루어짐
 - 노무현 정부 시기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가 신설(2003년)되었으며, 동해·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분리와 부산항만공사 도입에 따른 부산청의 조직개편, 인천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한 인천청의 조직개편이 실행됨. 제주지방해양항만청이 폐지(2006년)되었으며 부산청 소속의 보조기관인 제주해양관리단으로 변경됨
 - 이명박 정부 시기 해양수산부가 폐지됨에 따라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됨
 - 박근혜 정부 시기 현장중심의 통합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지방해양항만청’에 수산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음. 동·서해어업관리단 어항건설과, 강릉, 인천어항사무소를 폐지하

고 4개 지방청(여수, 마산, 목포, 포항)에 어항건설과 신설하였으며 동해어업관리단 원양조업감시센터,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짐

- 문재인 정부 시기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함

<표 A-1> 역대 정부별 해양수산행정 조직 개편 주요 내용

구분	해양수산부 본부 조직 개편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지방 조직 개편 주요 내용
김영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의 신설(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해운항만청→지방해양수산청 개편
김대중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 규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체제의 출범 ■ 지방청의 해양환경과와 항무과 간 업무조정
노무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안정화 단계, 핵심기능의 집중 육성 ■ 정책홍보관리 강화 ■ 한미FTA에 대응한 조직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 종합관리소 신설(2003년) ■ 부산청·인천청의 조직개편 ■ 제주지방해양항만청 폐지
이명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폐지로 지방해양수산청이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박근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해양레저과 등 기능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해양항만청’에 수산기능 부여 및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명칭 변경 ■ 동·서해어업관리단 어항건설과, 강릉, 인천어항사무소 폐지 ■ 4개 지방청(여수, 마산, 목포, 포항)에 어항건설과 신설 ■ 동해어업관리단 원양조업감시센터,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 ■ 해양경찰청 폐지
문재인 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 부활

2. 중소기업행정 조직의 역사

- 각 정권별로 중소기업청 본부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영삼 정부 시기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중소기업청이 신설(1996년)되었으며 본부는 1청장(차관급), 1차장, 1관 5국 10과 7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육성정책 수립,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 동향 조사분석,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자금·인력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중소기업 수요기반확충, 중소기업 재해관리, 경영정보화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함
 - 김대중 정부 들어 핵심역량 위주의 정부 재편이 실시되면서 중소기업청은 다소 축소되었는데, 본부의 산업 1국, 2국과 같은 업종별 조직을 폐지하고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하였고, 5과를 통합·폐지하였으며 소속기관인 국립기술품질원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함
 - 노무현 정부 시기는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한 개편이 주를 이루었음(정부 혁신 기능의 강화, 창업기능 활성화,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 증진 및 중소기업의 공동화에 대한 대응,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실·국 체제에서 본부·팀체제로 조직의 전면 개편이 실시됨
 - 이명박 정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본부·팀 체제를 대국대과체제로 개편(2008-9년)하였음
 - 박근혜 정부 시기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 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관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2017년)하였음.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였음

- 각 정권별로 중소기업청 지방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영삼 정부 중소기업청 신설 당시 소속기관으로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을 설치하였으며,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은 4개 지방청(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7개 지방사무소(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로 구성됨
 - 김대중 정부 들어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 명칭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통일(1급 지방청과 2급 지방청으로 구분)하였고 각 지방청별로 존재하던 기술지원과 시험검사 기능을 1개과로 통합함.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1급 지방청으로 승격하였으며, 대전·충남지방사무소가 신설(2002년)됨
 - 노무현 정부는 지방청의 기능강화를 위해 시험연구지원과를 신설하였음.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의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은 폐지(2006년)되었으며 대전과 충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대전·충남지방청(2급 지청)으로 승격하였음
 - 이명박 정부 시기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접근성 불편해소 등을 목적으로 지방에 3개 사무소(울산, 경기북부, 충남)가 신설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3개 국립공고(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함
 - 박근혜 정부 시기 울산사무소가 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 승격하였으며 경북북부사무소, 전남동부사무소, 강원영동사무소의 3개 사무소가 신설되어 12지방청, 5사무소 체제가 됨
 -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의 명칭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2018.07) 12지방청, 5사무소 체제를 유지함

<표 A-2> 역대 정부별 중소기업행정 조직 개편 주요 내용

구분	중소기업청 본부 조직 개편 주요 내용	중소기업청 지방 조직 개편 주요 내용
김영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 신설(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 소속기관으로 11개 지방중소기업청(4개 지방청과 7개 지방사무소) 설치
김대중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조직을 폐지하고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개편 국립기술품질원을 산업자원부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청과 지방사무소의 명칭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통일 경기지방청 1급 지방청으로 승격 대전·충남지방사무소 신설
노무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한 개편 실시 실·국 체제에서 본부·팀체제로 전면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청에 시험연구지원과 신설 제주지방중소기업청 폐지 대전·충남지방사무소 2급 지청으로 승격
이명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팀체제에서 대국대과체제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에 3개 사무소(울산, 경기북부, 충남) 신설 3개 국립공고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박근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기획 기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사무소가 울산지방청으로 승격 3개 사무소(경기북부, 전남동부, 강원영동) 신설
문재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중소기업청→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명칭 변경